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신영임 · 강민지

2014. 2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연구보고서 제18호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총괄 | 박용주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홍형선 조세분석심의관
심혜정 세수추계과장

작성 | 신영임 세수추계과 경제분석관
강민지 세수추계과 경제분석관

지원 | 장유진 세수추계과 행정실무원

「연구보고서」는 경제현안 및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심사와 의제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 02) 788-4744 | ret@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신영임 · 강민지

2014. 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세는 세수부족은 물론 과세형평성 저해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FIU 정보공유 확대 등과 같은 각종 제도개편을 통해 지하경제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소득 적출률(실제소득 대비 적출소득 비율)은 2005년 12월 57%에서 2009년 9월 31%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39.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탈세 규모 축소를 통한 세수 확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탈루율 등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은 편이나, 기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대부분 2008년 이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의 연구만으로는 최근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고, 종합소득세 탈루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2003~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소득세 프로그램(Tax calculator)을 구성하여 실제소득과 보고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구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세수가 실제 세수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국회의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요 약

1. 논의 배경

- 지속적인 제도 개편과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각종 제도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의 한계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소득 적출률(실제소득 대비 적출소득 비율)은 2005년 57%에서 2009년 31%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39.4%까지 증가하는 등, 2010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신용카드 결제금액 증가율은 2010년까지 10~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년 8.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현금영수증 결제금액도 2010년 10.6%에서 2012년 1.9%로 증가율이 둔화
-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하고자 노력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수를 추계할 경우, 단순한 가정에서 나아가 최대한 소득세법을 반영하고, 실제 세수와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 소득 분위별로 탈루율이 다를 것으로 가정
 - 2003~2012년 탈루율을 추계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시계열을 가장 최근까지 연장, 10년 동안의 시계열을 추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추이 비교 가능

2. 기존 문헌 연구

-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는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30%대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

- 2003년 이후에는 연구별로 탈루율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
- 분석 자료, 추정방법 및 가정 등의 차이로 인해 연구별로 탈루율 편차가 작지 않은 편: 2008년 소득 탈루율은 16~54%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기존연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단위: %)

연구	자료	93	94	95	96	97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소비합수 추정법																
강석훈·박찬용(2003)	가계조사				39											
현진권·김용대(2003)	가구소비				20			17								
이철인(1998)	대우패널		52	45												
소득합수 추정법																
전승훈·신영임(2009)	가계조사										26	28	28	31	34	36
노영훈·김현숙(2005)	가계조사										50					
성명재(1999)	가계조사		48	49	52	46	48									
엔겔곡선 추정법																
박명호(2010)	가계조사													26-52	21-47	16-54
김봉근 외 2인(2008)	노동패널							42	21	50	24	25	32			
김형준, 박명호(2007)	가계조사											11-20				
문춘걸, 김영귀(2002)	가계조사				32											
유일호(1998)	가계조사	34-74	31-52													
수요방정식 추정법																
전병목·안종석(2005)	가계조사										22-36					
소득합수/국세신고자료																
성명재(2011)	가계조사,															17
성명재(2008)	국세통계										36	37	36	30		

3.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 추정 결과

□ 분석 자료 및 방법

- 2003~201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사용
- 소득함수 추정법 사용
 - 근로자가구는 소득을 성실신고하는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소득을 축소보고하고,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
 -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자영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
- 소득세수의 계산: 소득탈루에 따른 소득세 탈루율을 측정하기 위해 보고소득과 추정소득에 각 연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
 -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등 특별공제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적용,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표준공제 적용 등

□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로 추정됨

- 국세청의 소득적출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인데, 이는 세무조사 결과상 소득적출률 수치가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기존 연구들의 추정결과간의 편차가 방법별로 크기 때문에, 본 보고서 분석결과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 약 25%에서 2012년 약 2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는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20~30%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2003년~2008년 사이에는 증감을 반복하는 등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며, 2008년 이후에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고소득계층과 하위계층에서 중산층보다 높은 U자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탈루율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

- 2012년 소득 탈루율: 상위 10% 계층 33.5%, 하위 10% 계층 15.1%
- 고소득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
 -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신고 실태를 지켜볼 필요
- 저소득층의 소득 탈루율 하락속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빠른 원인으로 EITC 도입 및 2008~2009년 유가환급금 정책 실시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소득 탈루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추정소득'의 절대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하위그룹의 영세 자영업자는 대부분 기장이 어려워 추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탈루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 있음

[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결과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26.2	34.5	25.8	23.4	25.8	19.4	18.5	16.9	13.4	15.1
10~20%	22.6	20.5	19.1	18.1	20.1	18.9	17.5	13.6	19.0	15.9
20~30%	15.0	18.6	15.9	19.2	18.5	14.5	16.4	15.6	15.3	20.7
30~40%	19.2	21.4	19.6	17.6	20.2	18.0	17.9	17.9	16.7	16.7
40~50%	22.2	23.7	20.8	22.7	20.1	20.8	16.3	14.8	18.0	18.1
50~60%	18.1	24.3	18.6	19.6	24.7	25.2	19.6	20.8	17.4	17.7
60~70%	22.6	19.0	21.2	26.0	26.7	25.2	23.2	22.1	24.0	21.9
70~80%	29.8	27.0	24.9	28.2	30.7	29.3	27.3	23.3	21.7	25.3
80~90%	32.3	28.2	31.6	31.3	35.8	39.8	27.9	29.8	30.5	26.8
상위 10%	44.8	42.6	45.9	36.4	46.9	44.7	41.8	33.7	37.6	33.5
전 체	25.3	25.9	24.3	24.3	26.8	25.2	22.6	20.5	20.8	20.8

주: 1. 소득 탈루율=(추정소득-보고소득)/추정소득, 추정소득 및 보고소득은 사업소득 기준임
 2.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소득 10분위 구분은 일치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2012년 기준 가구주 1인당 평균 207.8만원

-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탈루규모는 증가하며,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소득세 탈루규모는 하위 10% 소득세 탈루규모 대비 약 93배로, 2003년 141배에서 감소
- 2003 ~ 2012년 1인당 소득세 탈루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동 기간 1인당 결정세액 연평균 증가율 8.2%에 비해 낮음

[표] 자영업자 가구주의 1인당 평균 소득세 탈루규모 추정 결과

(단위: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5.4	8.4	14.2	13.0	21.0	12.5	11.3	10.3	9.8	10.2
10~20%	22.5	27.8	36.1	31.3	46.6	40.5	33.9	28.7	41.1	36.3
20~30%	38.5	51.5	46.4	56.2	66.2	47.2	52.0	50.7	53.4	79.5
30~40%	57.7	74.6	71.6	65.3	84.1	77.1	71.3	71.5	70.4	75.6
40~50%	85.2	106.3	90.6	99.1	98.7	102.6	81.2	70.9	97.7	99.7
50~60%	86.3	121.3	96.4	102.2	137.6	140.5	108.8	115.7	119.9	123.1
60~70%	131.3	115.2	125.7	162.3	179.8	190.2	162.7	150.5	202.1	184.1
70~80%	206.2	187.3	172.6	202.1	265.4	276.1	240.5	212.6	245.1	262.3
80~90%	291.5	267.2	296.2	311.3	411.5	507.3	325.6	363.2	458.8	390.7
상위 10%	763.3	738.3	881.1	668.9	963.4	1,114.7	889.5	729.4	1,057.0	943.6
전 체	171.7	166.9	183.9	172.7	220.0	237.6	195.3	166.8	215.9	207.8

- 주: 1.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소득 10분위 구분은 일치하지 않음
 2. 탈루세액은 탈루사업소득 외에도 탈루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3. 본 통계는 가구주만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세액이 낮은 배우자, 기타 가구원을 포함할 경우, 평균 탈루세액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고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소득 탈루율 축소를 위한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

차 례

요 약

I. 서 론 / 1

II. 기존 문헌 연구 / 5

1. 소비함수 추정법	5
2. 소득함수 추정법	6
3. 앵겔곡선 추정법	10
4. 수요방정식 추정법	12
5. 소득함수 추정법과 국세신고자료 결합	13
6.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결과 비교	14

III.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 추정 / 19

1. 분석자료	19
2. 소득함수 추정 모형 및 결과	23
3. 소득 탈루율 분석결과	28
4. 소득세 탈루율 분석결과	30

IV. 결 론 / 35

※ 부록 I: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소득세 추계방법 / 39

※ 부록 II: 지하경제 규모, 과표양성화 관련 제도 변천 / 73

참고문헌 / 83

표 차례

[표 1]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2
[표 2] 추정 모형 및 설명 변수	9
[표 3] 자영업자가구 소득추정 문헌에서 사용한 표본 및 가정	15
[표 4] 기존연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18
[표 5] 분석대상 가구 수	20
[표 6] 기초 통계량	22
[표 7]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 추정결과	25
[표 8] 자영업자가구의 추정소득 결과	27
[표 9]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결과	28
[표 10] 자영업자가구주의 소득세 탈루율 추정 결과	32
[표 11] 자영업자 가구주의 1인당 평균 소득세 탈루규모 추정 결과	33
[표 12] 소득세의 계산구조	40
[표 13] 가계동향조사 소득 항목의 구성	45
[표 14] 근로소득공제제도 변화(1)	46
[표 15] 근로소득공제제도 변화(2)	46
[표 16]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47
[표 17]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의 요건	48
[표 18] 특별공제의 기본 구조	48
[표 19] 보험료 특별공제 한도	49
[표 20] 4대보험 보험료율	49
[표 21] 건강보험 직장표준월급여액 및 보험료율,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현황 ...	50
[표 22] 건강보험료 소득 상하한선	51
[표 23] 특별공제 제도 변화	52
[표 24] 가계동향조사 의료비 항목의 구성	53
[표 25] 교육비 특별공제 한도 변화	54
[표 26]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항목의 구성	55
[표 27] 주택자금공제, 2013	56
[표 28] 월세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혁	56

[표 29] 가계동향조사 주택자금 관련 항목의 구성	57
[표 30] 가계동향조사 주택대출 이자, 이자비용 항목의 구성	58
[표 31] 2012년 공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제도 요약	59
[표 32] 국민연금 제도 요약	60
[표 33] 군인연금 보험료율 연혁	60
[표 34] 가계동향조사 연금관련 지출 항목의 구성	61
[표 35]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62
[표 3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혁	63
[표 37] 연금보험료 공제	64
[표 38] 가계동향조사 연금저축관련 구성	65
[표 39] 개인연금저축제도 및 연금저축제도 요약	65
[표 40] 조특법상 소득공제 적용 여부	66
[표 41] 과세구간별 세율	67
[표 4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68
[표 43] 근로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1인당 세부담	70
[표 44] 근로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총계	70
[표 45] 종합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1인당 세부담	71
[표 46] 종합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총계	71
[표 47] 소득수준별 연간 근로소득, 2008	72

그림 차례

[그림 1] 소득분위별 소득 탈루율	29
---------------------------	----

I. 서론

탈세는 세수 부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탈세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꾸준히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제도개편¹⁾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파악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민계정상의 소득 통계와 국세 통계를 비교해 볼 때, 사업소득 파악률²⁾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증가하였고, 근로소득 파악률은 2011년 99.5%로 실세소득의 대부분이 과세당국에 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과세대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근로소득자³⁾ 중 과세대상자 비중은 2008년 57.0%를 달성한 이후 2011년에는 63.9%까지 증가하는 등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⁴⁾ 종합소득세 총 납세인원대비 과세대상자⁵⁾의 비중도 1995년 38.1%에서 2000년 43.9%로 상승한 이후, 2005년까지 44% 내외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57.0%, 2011년 58.6%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에도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도입(2000) 및 확대(2009),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제도 도입(2010) 및 확대(2013)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장부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7년 사업용 계좌 제도를 신설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용 계좌 미개설 또는 미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 조사역량을 집중한 바 있다(국세청, 2013.5.29. 보도자료).

2) 사업소득 소득파악률 = 국세통계의 사업·부동산 소득/국민계정의 개인영업잉여
근로소득 소득파악률 = 국세통계의 근로소득 총급여/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임금및급여)

3) 국세통계연보에서 이용 가능한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일용근로자가 제외된 수치이다.

4) 1995년 68.8%에서 2002년 51.5%까지 하락하였다. 1997~2002년 동안 발생한 큰 폭의 과세자 비율 하락은 근로소득공제를 상향조정에 기인한다.

5)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확정신고 인원 및 과세미달 추계인원으로 구성되며, 확정신고 인원중에서도 과세미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여 추정하였다(납세인원 = 확정신고인원 + 과세미달추정인원, 확정신고인원 = 과세미달자 + 과세대상자).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 적출률(실제소득 대비 적출소득 비율)은 2005년 12월 57%에서 2009년 9월 31%까지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39.4%까지 증가하였다. 국세청은 동 조사결과에 대해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적출률의 추이가 2009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1]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단위: 명, 억원, %)

	조사대상 인원(A)	실제소득 (B)	신고소득 (C)	적출소득 (D)	부과세액 (E)	1인당 (E/A)	조세범 처벌(F)	적출률 (D/B)
1차(2005.12.22)	422	5,302	2,286	3,016	1,094	2.6	6	56.9
2차(2006.3.20)	319	5,516	2,331	3,185	1,065	3.3	5	57.7
3차(2006.8.16)	362	15,459	7,932	7,527	2,454	6.8	30	48.7
4차(2006.11.6)	312	10,911	5,777	5,134	2,096	6.7	32	47.1
5차(2007.2.26)	315	11,048	5,795	5,253	2,147	6.8	37	47.5
6차(2007.6.21)	259	7,865	4,230	3,635	1,581	6.1	47	46.2
7차(2008.1.10)	199	6,688	3,671	3,017	1,271	6.4	23	45.1
8차(2008.8.21)	136	4,075	2,257	1,818	843	6.2	15	44.6
9차(2008.11.28)	147	2,874	1,630	1,244	905	6.2	12	43.3
10차(2009.5.6)	130	5,160	3,048	2,112	883	6.8	5	40.9
11차(2009.9.26)	150	2,751	1,894	857	378	2.5	1	31.2
2010	451	10,285	6,267	4,018	2,030	4.5	8	39.1
2011	596	20,431	12,764	7,667	3,632	6.1	28	37.5
2012	598	17,967	10,889	7,078	3,709	6.2	27	39.4

주: 1. ()안은 조사 착수일

2. 국세청은 2005~2009년 동안 기획조사 형식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수시조사 형식으로 변경하여 조사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1차~10차) 및 국세청 자료 협조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각종 제도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의 한계 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1%에서 2005년 45.3%로, 2011년 88.0%, 2012년에는 91.0%까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⁶⁾ 신용카드 결제금액 증가율은 2010년까지 10~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8.5%, 2012년 8.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고, 현금영수증 결제금액도 2010년 10.6%에서 2011년 6.5%, 2012년 1.9%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수 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탈루규모 축소를 통해 과세베이스를 더 넓히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느 규모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소득 분위별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3~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실제 소득과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고, 소득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제소득과 보고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소득세 탈루율을 추정한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에 대한 추정은 성명재(2008), 박명호(2010) 등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탈루율을 추정하는 경우의 오차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떤 가정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계하였는지, 소득세를 추계한 결과가 소득세 세입 실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금 계산 프로그램이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단순히 계산하는 계산기(calculator)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세수를 추계할 경우,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자료상 한계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수를 추계할 경우, 각종 제한적 가정들을 최대한 개선하였다.

6) 동 자료는 해당연도 중 신용카드사에서 통보받은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이다. 신용카드사로부터 과세자료 활용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과 다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및 연합뉴스(2013.8.20.)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2013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1.1일부터 시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의 탈루율을 소득 분위별로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탈루율이 소득 분위별로 다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존 연구들 중에서 탈루율을 소득 분위별로 추정한 연구는 김형준·박명호(2007), 성명재(2008, 2011), 전승훈·신영임(2009)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2003~2012년의 탈루율을 추계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시계열을 가장 최근까지 연장시켰으며, 10년 동안의 시계열을 추계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세 탈루율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는 2008년까지의 추이만 확인이 가능하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소득 탈루율을 추정한 방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 2003~2012년 자료를 사용하여 탈루 규모를 추정한다. VI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담는다. 한편, 부록에서는 미시자료를 통해 세수추계하는 방법을 다룬다.

II. 기존 문헌 연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축소 신고 및 이에 따른 탈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은 편이다.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비함수 추정법, 소득함수 추정법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 소득함수 추정시 식료품소비함수를 추가한 엔겔곡선 추정법, 수요방정식 추정법, 소득함수에 국제신고자료를 결합한 방법 등이 있다. 우선 추정방법 및 이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각각 자료, 추정 기간, 소득의 정의, 추정식, 표본추출 및 가정, 특이점을 위주로 살펴보고, 추정결과에 위 다섯 가지 방법을 함께 비교하여 서술한다.

1. 소비함수 추정법

소비함수 추정법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비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근로자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이철인(1998), 강석훈·박찬용(2003), 현진권·김용대(2003) 등이다. 다만, 이 방식은 소비함수로부터 소득을 역산하여 추정하게 됨에 따라 통계적인 적합성이 떨어지는 등의 계량경제학적 문제가 있다.⁷⁾

소비함수 추정: $\ln C_i = \alpha_i Z_i + \beta_i \ln Y_i + \epsilon_i$

C_i : i번째 가구의 소비; Y_i : 보고소득; Z_i : 가구특성변수

7) 강석훈·박찬용(2003)에 의하면, 다음 소비함수 및 소득함수에서 소득과 소비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만 $\hat{\beta}_2 = 1/\hat{\beta}_1$ 이 성립하나, 소득-소비 상관관계가 1인 아닌 경우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비함수를 통해 소득을 추정할 경우 통계적인 합리성이 결여된다.

소비함수: $C_i = \alpha_1 + \beta_1 Y_i + \epsilon_{1i}$

소득함수: $Y_i = \alpha_2 + \beta_2 C_i + \epsilon_{2i}$, C_i : 지출, Y_i : 소득, ϵ : 오차항

이철인(1998)은 1993~1995년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였다.⁸⁾ 가구총소득 외에 주택보유형태(자가, 전세, 월세더미), 가구구성원수가 가구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이라 보았다. 가구총소득 및 가구총소비지출변수는 가구구성원 각각의 지난 1년간의 월평균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으로 번 소득, 지출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구원의 소득변수, 가구소비지출, 주택보유형태, 가장의 나이, 가구원 수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가구주가 가구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조달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경우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강석훈·박찬용(2003)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나타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소비함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소득을 추정할 경우, 소득-소비 간 관계의 통계적 합리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 소득의 과대추정가능성 및 저소득자 소득의 과소추정가능성 문제가 발생함을 보이고, 동 방법의 대안으로 소득함수 추정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소득 추정모형들이 소득과 소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경제학적 변수의 이용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가구주의 성, 연령, 직업, 거주지역, 가구유형(맞벌이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일반가구) 등을 포함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⁹⁾

현진권·김용대(2003)는 1996년 및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소보고율을 추정하였다. 각 가구의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은 주택소유여부, 가구구성원수, 각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2. 소득함수 추정법

소득함수 추정법은 근로자가구는 소득을 성실신고하는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소득을 축소보고하고,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자영업자에

8) 동 문헌에서 1993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다른 연도를 이용해 얻은 결과와 유사하여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표 4]에서는 1994~1995년도에 대해서만 보고하였다

9) 해당 연구에서는 소비함수 추정법의 통계적 오류 등을 검증하고, 소득함수 추정법도 사용하였다.

그대로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역소비함수 추정법이라고도 한다. 이 때 소득함수의 종속변수는 소득, 독립변수는 주로 소비 및 가구 특성변수이다. 소득함수 추정법은 소비함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계량경제학적 문제점에서 자유롭지만, 소비함수 추정법과 같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비패턴이 동일하며, 소득-소비간의 관계가 확정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현숙, 2006). 동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성명재·전영준(1999), 노영훈·김현숙(2005), 전승훈·신영임(2009) 등을 들 수 있다.

소득함수 추정: $\ln Y_i = \alpha_i Z_i + \beta_i \ln C_i + \epsilon_i$

Y_i =i번째 가구의 보고소득; Z_i =가구특성변수; C_i =소비

성명재·전영준(1999)은 1997~1998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¹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당시 통계청은 도시가계조사 작성시 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 및 소비지출 항목을 모두 보고하였으나,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소득 관련 조사자료의 신뢰성이 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고 소득관련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분포 파악을 위해 소득함수 추정법을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자가구 전체의 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근로자가구의 가구총소득과 소비, 가구원수, 가구주의 학력수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관계를 활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평균가구총소득을 추정하였다. 평균총소득에 오차항을 반영하여 각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을 추정하는데, 오차항은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표준오차를 추정하여 무작위수를 산출하는 방법(random number generate)을 응용하였다.

동 연구의 분석대상은 각 표본의 조사자료 가운데 분기별로 최소한 1개월 이상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자료를 분기별 자료로 환산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법을 통해 연간자료를 획득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무직가구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분기에는 무직가구이지만 다른 분기에서는 근로자가

10)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2003년 ‘가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가계동향조사’로 다시 변경되었다.

구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 무직가구는 사실상 근로자가구로 처리하였으며, 실업가구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제거하여 실업가구의 비율을 조정하여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어 세부담을 추정하였는데, 근로자는 소득신고율이 100%라는 가정하에 조사된 소득자료에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 추정한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신고율을 먼저 추정하고 그 신고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신고소득에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계산하였다.

노영훈·김현숙(2005)은 2003년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함수를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추정하였다.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은 소비,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더미(초, 중, 고, 대, 대학원)를 독립변수로 하는 소득함수를 통해 추정한 가구평균소득에, 교란항에 대한 정규분포 가정하에 소득추정방정식의 잔차를 이용해 구한 표준오차를 더해 구한다. 또한 인별 세부담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가구 총소득을 구한 후, 모든 가구원이 동일한 비율로 소득을 과소보고 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자영업자가구의 구성원별로 분리하여 가구원별 소득을 추정하였다. 분석대상은 각 분기별 자료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한 분기라도 가구에 대한 기초정보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가구의 연평균 변수들을 계산하여 활용하였다.¹¹⁾

전승훈·신영임(2009)은 2003~2008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자가구주의 소득 탈루율 및 소득세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동 연구는 가구의 소득 탈루율을 추정한 기존 연구와 달리 가구주 기준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실제소득은 가구원수, 가구의 취업자 수, 주택소유여부 더미, 가구주 학력수준(초, 중, 고, 대, 대학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분석대상은 연도별 분석표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인가구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근로자가구이면서 가구주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자영업자가구이면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종사하는 산업이 ‘무직 혹은 기타’로 분류된 가구의 경우 무직으로 분리하였으며, 취업인원은 각 가구에서 취업한 가구원수를 합하여 구하였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은 가계동향조사의 구분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11) 부동산 과세 모자료와의 통합시 더 많은 표본을 활용하기 위한 선택으로, 그 결과 계절적 변화를 조정하지 못한 가구의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추정한 소득불평등도 등이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한 기존연구보다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추정 모형 및 설명 변수

연 구	추정 모형 설명 변수
성명재(2011)	- $\ln(\text{소비지출})$, $\ln(\text{가구원수})$, 가구의 교육수준 더미 - 가구의 성별이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설명변수에서 제외
박명호(2010)	- 식료품지출함수 설명변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가구주 교육더미들, 배우자 교육더미들, 비동거 학업자녀수, 단독주택 거주더미, 아파트 거주더미
전승훈·신영임(2009)	- $\ln(\text{소비지출})$,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구의 교육수준 더미
성명재(2008)	- $\ln(\text{소비지출})$, $\ln(\text{가구원수})$, 가구의 교육수준 더미
김형준·박명호(2007)	- 식료품지출함수 설명변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가구주 교육더미들, 배우자 교육더미들, 취업인원수 - 식료품지출함수 설명변수: 가구원수, 취학자녀수, 결혼여부, 일반동거가구, 맞벌이가구, 편부모/비동거가구, 특별시거주 더미, 도시거주 더미, 주택소유 여부, 자동차소유대수
김현숙(2006)	- $\ln(\text{소비지출})$, 맞벌이어부더미,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서울거주 여부 더미, 주택소유여부 더미, 자녀수, 가구의 교육수준 더미
노영훈·김현숙(2005)	- $\ln(\text{소비지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의 교육수준 더미
강석훈·박찬용(2003)	- $\ln(\text{소비지출})$, 가구주연령, 취업자수, 가구원수, 가구주 성더미, 가구주 직업더미(사무직근로자,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 생산직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의 교육수준 더미(초중고대학원), 가구 거주지역더미(서울=1), 가구유형더미(맞벌이, 노인, 모자), 가구 입주형태(전세, 월세, 기타) - $\ln(\text{소비지출})$ 2: 소비지출의 자승 추가(소득과 소비간의 비선형 관계 고려)
문춘걸·김영귀(2002)	- 특별시 거주더미, 도시지역 거주더미, 가구원 중 취업자수, 주택 소유더미, 순저축액,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제곱, 가구주 성별, 직업더미(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근로자, 서비스직 근로자, 어업근로자, 기능근로자, 기계조작원), 교육수준더미(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맞벌이 배우자 더미
성명재·전영준(1999)	- 소비지출 수준, 가구원수, 가구주 교육수준 더미
성명재(1999)	- 소비지출 수준, 학력수준 더미, 가족구성원수, 가구의 연령

주: 편의상 본 표에서는 소득함수 추정법과 엔겔곡선 추정법을 이용한 연구의 설명변수를 함께 정리함

3. 앵겔곡선 추정법

앵겔곡선 추정법은 Pissarides and Weber(1989)의 추정기법을 따른 것으로 소득과 식료품지출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소득함수를 통해 얻은 소득추정치를 식료품지출함수에 사용하는 2단계 추정방식(2SLS)을 따른다. 동 방법은 과세당국에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과세소득을 축소신고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보고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있다. 다만, 식료품 지출의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가정을 따른다.¹²⁾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후 자영업자가구의 식료품 소비가 높다면, 자영업자가구가 소득을 과소보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text{보고소득 추정:} \quad \ln Y'_i = Z_i \delta_1 + X_i \delta_2 + \zeta_i$$

$$\text{식료품소비함수 추정:} \quad \ln C_{ij} = Z_i \alpha_j + \beta_j \ln Y'_i + \gamma_j SE_i + \eta_i$$

Y'_i : i번째 가구의 보고소득

Z_i : 가구특성변수

X_i : 도구변수

C_i : 식료품소비

SE_i : 자영업자가구 더미(자영업자가구=1)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문춘걸·김영귀(2002), 김형준·박명호(2007), 김봉근 외 2인(2008), 박명호(2010) 등이 있다.

문춘걸·김영귀(2002)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식료품소비함수 및 소득함수를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¹³⁾을 추정하였다. 식료품소비지출액은 가구의 실제소득 외에 가구의 인적 구성, 주거지역 특성(특별시 거주여부, 도시지역 거주여부), 부의 대용변수(순저축액, 자가용의 소유 대수, 각종 내구재 보유정도), 식 생활에 관련되는 내구재의 보유현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실제소득은 가구의 취업자 수, 주거지역 특성(상이한 경제현황과 경제적 기회를 반영), 가

12) 보고소득을 추정할 때 잔차항이 실제소득과 보고소득의 차이, 실제소득과 향상소득의 차이, 향상소득 자체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수식 및 첨자는 김현숙(2006)을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가정 및 추정식 도출은 김현숙(2006) 및 박명호(2010)를 참고할 것

13) 가구원별 근로·사업·부업소득, 항목별 재산·이전소득

구주의 연령·직종·교육, 배우자의 취업유무, 부의 대용변수(순저축액, 주택소유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동 연구는 분석을 위해 1인 가구, 가구구분이 무직인 가구, 가구주의 직업이 무직 또는 분류불능인 가구, 취업목적으로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는 가구, 가족관계가 아닌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김형준·박명호(2007)는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해 2004년 이분산성을 교정한 2단계 추정방법(Heteroscedasticity-corrected 2SLS)을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¹⁴⁾ 및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식료품소비지출액은 가구구성(가구원수, 취학자녀수, 결혼여부), 가구유형(일반동거가구, 맞벌이가구, 편부모 및 비동거가구), 주거지역특성(특별시거주 더미, 기타 도시거주 더미), 부의 대용변수(주택소유 여부, 자동차소유대수), 실제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실제소득은 가구구성(가구원수, 취학자녀수, 결혼여부, 취업인원수), 가구유형(일반동거가구, 맞벌이가구, 편부모 및 비동거가구), 주거지역특성(특별시거주 더미, 기타 도시거주 더미), 부의 대용변수(주택소유 여부, 자동차소유대수), 가구주 특성(연령, 연령제곱, 학력수준), 배우자 특성(학력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분석대상¹⁵⁾은 특정 월에 응답가구가 불응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가계부의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Imputation 기법으로 다른 가구의 정보가 대치된 관찰치 및 12개월 중 어느 한 달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고, 12개월 내내 무직 가구로 분류된 가구 및 연간 가처분소득(경상소득-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이 음수인 가구를 제외하여 도출하였다. 참고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구분을 위해 Pissarides and Weber(1989) 및 성명재·전영준(1999)와 같이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 연구는 자영업자의 소득 과소보고율을 소득계층별로 추정하였는데, 중산층의 탈루율이 가장 낮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탈루율은 중산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호(2010)는 2006~2008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이분산성을 교정한 2단계 추정방법으로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 및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방법을 따르되, 시계열을 확장하고,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의 구분 및 표본추출방법을 일부 변경하였다. 식료품지출함수는 가구구성(가구원수, 동거미혼자녀수, 동거취학자

14) 총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종의 가처분소득을 사용한다.

15) 2004년 가계조사자료의 총 8,492가구의 88,391개 관찰치 중 3,952가구의 47,424개 관찰치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녀수, 취업인원수), 가구유형(홀벌이가구, 부부맞벌이가구, 기타맞벌이가구), 주거지역특성(특별시거주 더미, 기타 도시거주 더미), 부의 대용변수(주택소유 여부, 자동차소유대수), 실제소득에 의해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실제소득은 식료품지출 함수 설명변수 외에 가구주 특성(연령, 연령제곱, 학력수준), 배우자 특성(학력수준), 비동거 학업자녀수, 거주유형(단독주택 거주더미, 아파트 거주더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의 구분은 통계청의 구분을 사용하되, 본 분석에서는 1년 중 7개월 이상을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자영업자가구로 정의하였다. 추정시 가구원 구성, 가구주의 성별 등과 같은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소비행태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구,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65세 초과하는 가구, 1년 내내 가구주의 소득이 없는 경우, 연중 가구원수의 변동이 있는 가구, 연중 취업인원의 정보가 없는 가구, 가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계액보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액이 더 큰 가구를 제외¹⁶⁾하였다.

4. 수요방정식 추정법

수요방정식체계를 이용한 추정법은 엔겔곡선 추정법이 단일 방정식을 이용한 것과 달리 다양한 재화의 소비함수를 묶어 연립방정식 체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Pissarides and Weber(1989)의 방법을 발전시켜 영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Lyssiotou, Pashardes and Stengos(2004)의 분석방법이다. 동 방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소비 패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기존의 세 가지 추정법과 달리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비재 선호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실증분석 모형의 설정(specification)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크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¹⁷⁾

16) 그 결과 분석대상은 2006년 1543가구, 2007년 1553가구, 2008년 1484가구(근로자 1011, 자영업자 473)이다.

17) 여기서 수식 및 첨자는 전병목·안종석(2005)을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가정 및 추정식 도출은 동 논문을 참고할 것

$$\begin{aligned} \text{추정식: } C_{ij} = & \alpha_i + \beta_{ij}Z_{jh} + \gamma_i SE_h + \delta_i[(\log(Y_h) + \log(y_h^o + e_1 y_h^s))] \\ & + \zeta_i[(\log(Y_h) + \log(y_h^o + y_h^s))]^2 + \epsilon_i \end{aligned}$$

C_{ih} : h 번째 가구의 i 재에 대한 소비

Z_{jh} :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h 번째 가구의 특성

SE_h : h 번째 가구가 자영업자가구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가변수

Y_h : h 번째 가구의 보고된 경상소득

y_o : 경상소득에서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y_s : 경상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e_1 : 보고된 사업소득에 몇 배를 곱해야 실제 사업소득과 같은 규모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즉, ‘ $1/e_1$ ’이 소득보고율(보고소득/실제소득)을 의미함

전병목·안종석(2005)은 2004년 가계조사자료로 수요방정식 추정법을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경상소득을 추정하였다. 동 연구는 소비지출 항목을 ‘음식료품’, ‘교통·통신’, ‘의복·교육·오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였으며,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GMM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부가구를 임의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가계조사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은 Allan and Iglarsh(1996)의 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클러스터 분석¹⁸⁾을 시행하여 표본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없어 어느 집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구와 조사결과를 1개월 이상 누락한 경우는 분석대상에 제외하였다.

5. 소득함수 추정법과 국세신고자료 결합

소득함수 추정법과 국세신고자료를 결합한 추정법은 성명재(2008, 2011)에서 시도된 것이다. 동 연구방법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상

18) 클러스터 분석은 각 변수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표본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통계분석 방법 의미한다(전병목·안종석(2005)).

호비교하여, 미시자료로 추정된 1인당 세부담이 국세청의 1인당 세부담과 일치하는 소득신고율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성명재(2008)는 2003~2006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합수 추정법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추정된 후, 개인별로 세법을 적용¹⁹⁾하여 1인당 종합소득세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1인당 종합소득세 평균값을 국세통계연보상의 1인당 종합소득세 평균값과 비교하여, 두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소득신고율을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1 - \text{소득 탈루율}$)로 정의하였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합수 추정법을 통해 얻었는데, 소득은 소비지출, 가구원수, 가구주의 학력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성명재(2011)는 2008년 가계동향조사 및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사업소득구간별 소득 탈루율을 추정, 이를 합산하여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인 성명재(2008)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포착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던 것과 달리, 동 연구는 소득구간별로 소득포착률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소득구간은 국세통계연보에 제공된 종합소득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6.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결과 비교

다음 표는 기존 문헌에서 사용한 자료의 표본 및 가정을 요약한 것이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일은 자료의 한계 때문에 소득의 정의나 어떤 표본을 탈락시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표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면, 대표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biased sample),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소득 개념과 제외시킨 표본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소득은 대부분 경상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연구에 따라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다만, 소득세 추정시 이전소득은 소득세 추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 가구의 가계부 자료가

19)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세법을 적용하였다.

매월 빠짐없이 보고되지는 않는다. 어느 가구의 자료는 12개월 모두 보고가 되지만, 어느 가구의 자료는 최소 1개월만 보고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법도 각 연구별로 다르다. 분기별 최소 1개월 이상 조사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1개월 이상 누락하는 경우는 모두 제외함에 따라 12개월 모두 보고한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석기간이 시계열로 길게 연장되는 경우, 분석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는 2006년부터 1인가구를 조사하고 있어, 2006년 이전으로 시계열을 확장할 경우 1인가구를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이 외에 가구별 특성에 따른 분석대상의 이질성을 제외하기 위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65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연구도 있다.

[표 3] 자영업자가구 소득추정 문헌에서 사용한 표본 및 가정

연구	소득개념	Data sampling 및 가정
성명재·전영준 (1999)	가구의 총소득	- 분석대상: 분기별 최소 1개월 이상 조사 가구 - 무직가구는 근로자가구로 봄 - 실업자 비율 조정: 실업 가구가운데 일부 무작위 제거
성명재 (1999)	가구소득	- 자영업자 소득 추정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사용해야함에 유의
성명재 (2002)	가구소득	- 취업자영업자가구만 자영업자가구로 봄 - 자영업자였다가 부도·폐업·은퇴 등에 따라 무직가구화 하거나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자영업자가구에서 제외
노영훈·김현숙 (2005)	가구의 총소득	- 가구 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시장소득도 추가분석
전병목·안종석 (2005)	가구의 경상소득	- 1개월 이상 누락하는 경우 제외(12개월 모두 보고한 가구) - 성명재(2002)에 따르면 표본축소로 인한 편의(Attribution bias)는 경제적 관점에서 무시가능
전승훈·신영임 (2009)	가구주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1인가구 제외 - 근로자가구이면서 가구주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 자영업자가구이면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제외 - 통계청의 가구구분 활용 - 무직가구에 대한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가구주와 배우자의 종사하는 산업이 ‘무직 혹은 기타 인 경우 무직으로 분리 - 취업인원: 각 가구별 취업 가구원수를 합산 - 가구소득 중 가구주의 소득만 분석대상으로 함

연구	소득개념	Data sampling 및 가정
문춘걸· 김영귀 (2002)	가구의 총소득	- 가구원별 근로·사업·부업소득, 항목별 재산·이전소득 - 1인가구 제외, 가구구분이 무직인 가구 제외 - 가구주의 직업이 무직 또는 분류불능인 가구 제외 - 취업목적으로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는 가구 제외 - 가족관계가 아닌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제외
김형준· 박명호 (2007)	가구의 연간 가처분 소득	- 특정월에 응답가구가 불응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가계부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imputation 기업으로 다른 가구의 정보 대치된 관찰치 제외²⁰⁾ - 2004년의 12개월 중 한달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가구 제외 - 12개월 내내 무직으로 분류된 가구제외 - 연인가처분소득(경상소득·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이 음수인 가구 제외
박명호 (2010)	가구의 연간 가처분 소득	-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는 가구 제외 -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제외 -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65세 초과하는 가구 제외 - 1년 내내 가구주의 소득이 없는 경우 제외 - 연중 가구원수의 변동이 있는 가구 제외 - 연중 취업인원의 정보가 없는 가구도 분석대상에서 제외 - 가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계액보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액이 더 큰 가구도 제외

다음 표는 기존의 문헌에서 추정된 소득 탈루율을 추정방법별로 나타내고 있다. 먼저 소비함수 추정법을 따른 이철인(1998)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을 1994년 52%, 1995년 45%, 강석훈·박찬용(2003)은 소득루율은 39%로 추정하였다.

소득함수 추정법에 따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을 추정한 성명재(1999)는 1994~1998년 동안 46~52%, 노영훈·김현숙(2005)은 2003년 50%, 전승훈·신영임(2009)은 2003~2008년 동안 소득 탈루율이 26~36%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앵겔곡선 추정법을 따를 경우, 자영업자가구의 각 연도 소득 탈루율은 동 방법을 따를 경우 상한값과 하한값으로 구간으로 구해진다. 김봉근 외 2인(2008)은 2000~2005년 소득 탈루율을 21~50%로, 박명호(2010)는 2006~2008년 동안 16~54%로 추정하였다.

20) 현재 통계청에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수요방정식체계를 이용한 추정법을 따른 전병목·안중석(2005)은 2003~2004년 동안의 소득 탈루율을 22~36%로 분석하였다.

소득함수 추정법과 국세신고자료를 결합한 추정법을 따른 성명재(2008)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이 2003~2006년동안 30~37%임을 보였다. 추가로 성명재(2011)는 2011년 개인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17%임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가구의 탈루율을 추정한 기존 문헌과 달리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이 때 저소득자(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는 면세자이므로 소득을 전부 포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연간 종합소득 2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또한 극소보고 가능성에 따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득자가 표본에서 상당수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 비해 탈루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분석 자료, 추정방법 및 가정 등의 차이로 인해 연구별로 탈루율 편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탈루율은 20~52%, 2006년에는 26~52%, 2008년에는 16~54%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engel곡선 추정법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1996년이나 2003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일관성 있게 작거나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분석방법별로 차이는 큰 편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2003년 이전에는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30%대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2003년 이후에는 탈루율이 연구별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편차가 큰 편이어서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표 4] 기존연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단위: %)

연구	자료	93	94	95	96	97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소비함수 추정법																
강석훈박찬용(2003) ¹⁾	가계조사				39											
현진권김용대(2003)	가구소비				20			17								
이철인(1998)	대우패널		52	45												
소득함수 추정법																
전승훈신영임(2009) ²⁾	가계조사										26	28	28	31	34	36
노영훈김현숙(2005)	가계조사										50					
성명재(1999)	가계조사		48	49	52	46	48									
엡겔곡선 추정법																
박명호(2010)	가계조사													26-52	21-47	16-54
김봉근 외 2인(2008) ³⁾	노동패널							42	21	50	24	25	32			
김형준, 박명호(2007)	가계조사											11-20				
문춘걸,김영귀(2002)	가계조사				32											
유일호(1998)	가계조사	34-74	31-52													
수요방정식 추정법																
전병목인종석(2005)	가계조사										22-36					
소득함수/국세신고자료																
성명재(2011) ⁴⁾	가계조사															17
성명재(2008)	국세통계										36	37	36	30		

주: 1. 가구소득 기준 평균 소득 탈루율(대부분 1인 가구 제외)

1)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이 표에서는 추정소득이 보고소득보다 큰 경우(모형B, 소비함수)의 축소보고율(평균값)만 보고함.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소비함수는 소비(소득)를 하위계층에서 과소추정, 상위계층에서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가구주 소득 기준

3) 소득 탈루율 중간값

4) 자영업자 1인당 소득 탈루율

III.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 추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3~2012년 가계동향조사이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의 가구(단, 농어가·임가 등 일부는 제외)를 대상으로 가구의 인적 구성 및 소득과 소비지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가구단위로 담고 있는 서베이 자료이다. 동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 신축 아파트조사구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전국에 거주하는 1만 이상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2012년 10,401가구), 매월 면접 및 자기기입방식을 통하여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의 측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통계자료이다.

매월 가계부형식으로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지출정보를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의 특성상, 월 자료를 연간 자료로 변환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²¹⁾ 본 연구에서는 월 자료의 연 자료 변환을 위해, 각 가구별 월간 자료들의 평균을 구한 후, 이 월평균 값에 12를 곱해 연간자료로 변환하였다. 소득 및 지출 외에 가구의 특성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월의 값을 사용하였다. 서베이자료의 특성상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추출 가중치²²⁾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적용한 표본 선택 방법(data sampling)은 다음과 같다.²³⁾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 추정 후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본 연구의

21) 성명재(2002)에서는 모든 분기(반기)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합산하여 연간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때 연간자료 구성과정에서 계절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탈락되는 가구의 자료로 인해 자료 탈락 전후의 분포가 다르다면, 계절조정 과정에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하고 할 수 있어, 표본조정을 위해 근방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동 문헌에 따르면, 계절조정을 거쳐 연간자료를 구성하더라도 계절조정과정에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편의의 절대수준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편의가 있더라도 실제 모수와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임을 밝혔다.

22) 소득 10분위 구분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추출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저소득부터 최고소득까지 각 분위의 가중치의 합이 0.1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23) 표본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선택하였다(표 3참조).

특성상,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이 중요하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구분은 통계청의 구분 기준을 따랐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무직’인 경우나 연중 가구주 구분이 변경된 가구는 제외하였다. 가구주 소득이 1년 내내 없는 경우, 연중 가구원수 변동이 있는 가구, 연중 가구 내 취업인원의 정보가 없는 경우²⁴⁾, 연중 취업가구원수의 변동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가구도 연중 가구의 소득과 가구의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인 가구는 2006년부터 조사된 항목으로, 동 자료를 포함할 경우 분석기간 동안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²⁵⁾

위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한 결과, 분석대상 가구수는 2012년 기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0,401가구 중 4,489가구로 약 43.2%에 해당한다. 2003~2012년 동안 분석대상가구수는 전체 가계동향조사의 약 40% 수준을 차지한다.

[표 5] 분석대상 가구 수

(단위: 가구, %)

	가계동향조사 가구수 (A)	분석대상 가구수			B/A
		전체(B)	근로자	자영자	
2003	9,575	3,000	1,959	1,041	31.3
2004	9,159	3,306	2,157	1,149	36.1
2005	13,381	4,669	3,148	1,521	34.9
2006	12,458	4,734	3,200	1,534	38.0
2007	11,040	4,545	3,158	1,387	41.2
2008	11,012	4,726	3,294	1,432	42.9
2009	10,881	4,622	3,351	1,271	42.5
2010	10,667	4,507	3,260	1,247	42.3
2011	10,721	4,582	3,314	1,268	42.7
2012	10,401	4,489	3,221	1,268	43.2

24) 취업인원은 각 가구에서 취업한 가구원 수를 합하여 계산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되는 취업인원수 항목이 각 가구원의 상태가 ‘취업’인 경우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25) 1인 가구의 경우 인적공제 등이 적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동일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클 가능성이 크며, 이는 탈세로 인한 편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인 가구의 소득 탈루율과 탈세규모가 2인 이상 가구와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다음 표는 분석 표본의 연도별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근로자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는 2003년 3.57명에서 2012년 3.3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취업인원수는 2003년 1.43명에서 2010년 1.57명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1년 이후 1.5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소비지출은 2003년 2,200만원에서 2012년 3,1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연간 보고소득(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역시 2003년 3,570만원에서 2012년 5,2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평균소비성향(보고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2003년 0.71에서 2012년 0.68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는 2003년 3.51명에서 2012년 3.30명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취업인원수는 2003년 1.50명에서 2010년 1.76명까지 꾸준히 상승한 후, 2011년 이후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간 소비지출은 2003년 2,070만원에서 2012년 2,9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연간 보고소득 역시 2003년 2,830만원에서 2012년 4,59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보고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2003년 0.86에서 2012년 0.69로 약 20% 하락하였다. 지난 10년간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일정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증가율 보다 낮은 소비증가율, 자영업자가구의 소득탈루 축소에 따른 보고소득의 증가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표 6] 기초 통계량

(단위: 개, 명,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근로자가구	관측수	1,959	2,157	3,148	3,200	3,158	3,294	3,351	3,260	3,314	3,221
	가구원수	3.57	3.53	3.53	3.52	3.51	3.49	3.47	3.44	3.44	3.38
	취업인원수	1.43	1.46	1.49	1.51	1.52	1.52	1.56	1.57	1.56	1.56
	소비지출(연간)	2,200	2,360	2,470	2,550	2,690	2,790	2,800	2,880	3,030	3,100
	보고소득(연간)	3,570	3,830	4,020	4,140	4,450	4,650	4,580	4,690	4,970	5,200
	-가구근로소득	3,370	3,590	3,690	3,820	4,100	4,290	4,210	4,280	4,520	4,740
	-가구사업소득	121	146	188	169	187	185	191	200	199	219
	-가구재산소득	14	13	13	16	21	16	16	10	16	22
	-가구이전소득	63	81	127	134	143	160	158	199	234	222
	평균소비성향	0.71	0.69	0.70	0.69	0.68	0.68	0.70	0.69	0.70	0.68
자영업자가구	관측수	1,041	1,149	1,521	1,534	1,387	1,432	1,271	1,247	1,268	1,268
	가구원수	3.51	3.52	3.55	3.51	3.51	3.48	3.43	3.38	3.42	3.30
	취업인원수	1.50	1.55	1.64	1.66	1.68	1.68	1.75	1.76	1.74	1.75
	소비지출(연간)	2,070	2,260	2,330	2,470	2,540	2,610	2,610	2,720	2,970	2,900
	보고소득(연간)	2,830	3,070	3,230	3,410	3,470	3,700	3,910	4,170	4,530	4,590
	-가구근로소득	341	431	429	512	521	567	659	704	757	746
	-가구사업소득	2,340	2,480	2,670	2,750	2,830	2,960	3,100	3,300	3,600	3,680
	-가구재산소득	16	20	10	13	11	12	8	6	13	15
	-가구이전소득	131	143	119	136	118	160	142	163	159	151
	평균소비성향	0.86	0.82	0.82	0.82	0.81	0.79	0.76	0.72	0.74	0.69
전체가구	관측수	3,000	3,306	4,669	4,734	4,545	4,726	4,622	4,507	4,582	4,489
	가구원수	3.55	3.53	3.54	3.52	3.51	3.49	3.46	3.42	3.43	3.36
	취업인원수	1.45	1.49	1.54	1.56	1.57	1.57	1.61	1.62	1.61	1.61
	소비지출(연간)	2,150	2,320	2,430	2,530	2,640	2,730	2,740	2,830	3,010	3,040
	보고소득(연간)	3,310	3,560	3,760	3,910	4,150	4,360	4,390	4,540	4,850	5,030
	-가구근로소득	2,320	2,490	2,630	2,750	3,010	3,160	3,240	3,290	3,480	3,610
	-가구사업소득	892	956	997	1,010	992	1,030	991	1,060	1,140	1,200
	-가구재산소득	15	15	12	15	18	15	13	9	15	20
	-가구이전소득	87	103	124	135	135	160	153	189	213	202
	평균소비성향	0.76	0.73	0.74	0.73	0.72	0.72	0.71	0.70	0.71	0.68

2. 소득함수 추정 모형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소득함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실제소득을 추정하였다. 소득함수 추정법은 근로자가구는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반면, 자영업자가구는 소득을 축소보고하고,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²⁶⁾ 이러한 가정 하에,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자영업자에 그대로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역소비함수 추정법이라고도 한다.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소비 이외에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가구구성(가구원수, 취업자수), 부의 대용변수(주택소유여부 더미), 가구주 특성(연령, 성별, 학업수준), 주거지역 특성(도시거주 여부), 가구유형(노인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가구의 총소득을 추정하였다.

$$\ln Y_i = \beta_i \ln C_i + \alpha_{1i} X_{1i} + \alpha_{2i} X_{2i} + \alpha_{3i} X_{3i} + \alpha_{4i} X_{4i} + \alpha_{5i} X_{5i} + \epsilon_i$$

Y_i =i번째 가구의 보고소득;

C_i =소비,

X_{1i} =가구구성(가구원수, 취업자수),

X_{2i} =부의 대용변수(주택소유여부 더미),

X_{3i} =가구주 특성(연령, 성별, 학업수준 더미),

X_{4i} =주거지역 특성(도시거주 여부더미),

X_{5i} =가구유형(노인가구더미, 맞벌이가구더미, 일반가구더미)²⁷⁾

이분산성 검정(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분산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로버스트 추정을 실시하였다.

26) 자영업자가구가 보고한 가구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추정한다. 이때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중 보고된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정확한 반면, 사업소득만 축소 보고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자영업자 가구의 구성원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추정사업소득을 분리할 때, 노영훈·김현숙(2005)과 같이 보고소득의 비율을 따랐다. 이 방법은 모든 가구원이 동일한 비율로 소득을 과소보고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고소득자의 소득축소보고율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27) 모자가구더미는 다중공선성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28) 2012년 기준으로 보면 1%수준에서 유의하게 동분산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은 위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자영업자소득(fitted income, $\hat{y}$)에 소득추정방정식의 잔차를 이용하여 구한 표준오차($\hat{e}$)를 더하여 추정한다.²⁹⁾ 성명재(2008), 김현숙(2006)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 평균추정치($\hat{y}$)를 자영업자가구의 추정소득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소득의 분산은 자영업자 소득 평균추정치($\hat{y}$)에 대한 것만 반영할 뿐, 표준오차($\hat{e}$)³⁰⁾의 분산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3~2012년 동안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구의 총소득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동안 회귀계수의 방향성 및 크기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소비지출이 클수록, 가구 내 취업자수가 늘어날수록 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주택소유여부 더미는 가구총소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연령, 성별, 학업수준)변수 역시 가구총소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소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특성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도시거주 여부는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노인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일수록 가구 총소득이 낮고, 맞벌이가구이거나 일반가구일수록 가구 총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추정사업소득이 보고사업소득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우(소득탈루율이 음수로 추정) 추정사업소득을 보고사업소득으로 대체하였다(이 경우 소득탈루율이 0으로 추정).

30) 이때 e 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표 7] 근로자가구의 소득합수 추정결과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ln소비	0.719 (0.022)***	0.674 (0.022)***	0.685 (0.020)***	0.638 (0.018)***	0.617 (0.020)***	0.641 (0.020)***	0.590 (0.020)***	0.618 (0.018)***	0.609 (0.019)***	0.611 (0.019)***
취업자수	0.231 (0.024)***	0.218 (0.020)***	0.200 (0.020)***	0.217 (0.018)***	0.251 (0.018)***	0.280 (0.018)***	0.243 (0.017)***	0.235 (0.017)***	0.244 (0.019)***	0.255 (0.019)***
주택소유여부 더미	0.074 (0.016)***	0.086 (0.015)***	0.091 (0.014)***	0.073 (0.014)***	0.066 (0.014)***	0.069 (0.014)***	0.089 (0.014)***	0.099 (0.014)***	0.105 (0.013)***	0.121 (0.014)***
가구주 학력더미(초)	0.139 (0.118)	0.044 (0.096)	-0.013 (0.068)	0.060 (0.066)	0.070 (0.063)	0.128 (0.056)**	0.166 (0.071)**	0.118 (0.101)	0.164 (0.087)*	0.077 (0.080)
가구주 학력더미(중)	0.214 (0.117)*	0.049 (0.095)	0.050 (0.067)	0.087 (0.066)	0.121 (0.062)*	0.176 (0.055)***	0.201 (0.071)***	0.226 (0.102)**	0.254 (0.086)***	0.144 (0.077)*
가구주 학력더미(고)	0.322 (0.117)***	0.213 (0.095)**	0.160 (0.066)**	0.218 (0.065)***	0.279 (0.063)***	0.362 (0.055)***	0.289 (0.071)***	0.323 (0.103)***	0.359 (0.087)***	0.242 (0.077)***
가구주 학력더미(대)	0.456 (0.118)***	0.361 (0.096)***	0.331 (0.067)***	0.416 (0.066)***	0.460 (0.064)***	0.499 (0.057)***	0.470 (0.072)***	0.472 (0.104)***	0.515 (0.087)***	0.379 (0.079)***
가구주 학력더미(대학원)	0.548 (0.120)***	0.477 (0.101)***	0.409 (0.072)***	0.461 (0.072)***	0.563 (0.070)***	0.656 (0.060)***	0.632 (0.076)***	0.624 (0.107)***	0.656 (0.091)***	0.548 (0.08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구주 연령	0.001 (0.001)	0.002 (0.001)*	0.003 (0.001)***	0.003 (0.001)***	0.004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가구주 성별	0.177 (0.042)***	0.188 (0.040)***	0.189 (0.033)***	0.199 (0.032)***	0.180 (0.031)***	0.115 (0.033)***	0.199 (0.032)***	0.138 (0.033)***	0.128 (0.031)***	0.207 (0.036)***
도시거주여부	-0.015 (0.024)	-0.019 (0.019)	-0.024 (0.017)	-0.018 (0.017)	-0.019 (0.018)	-0.019 (0.019)	-0.026 (0.017)	-0.022 (0.017)	0.038 (0.016)**	0.004 (0.017)
노인가구여부 더미	0.146 (0.103)	-0.498 (0.097)***	-0.126 (0.171)	-0.487 (0.392)	-0.386 (0.292)	-0.604 (0.248)**	-0.317 (0.081)***	-0.392 (0.091)***	-0.367 (0.081)***	-0.348 (0.110)***
맞벌이가구여부 더미	0.362 (0.130)***	-0.351 (0.115)***	0.139 (0.181)	-0.158 (0.396)	-0.027 (0.294)	-0.472 (0.251)*	0.056 (0.093)	-0.113 (0.102)	-0.077 (0.092)	-0.113 (0.119)
일반가구여부 더미	0.388 (0.128)***	-0.337 (0.114)***	0.142 (0.181)	-0.162 (0.395)	-0.019 (0.294)	-0.410 (0.251)	0.056 (0.092)	-0.112 (0.102)	-0.044 (0.091)	-0.063 (0.118)
상수항	3.876 (0.384)***	5.417 (0.374)***	4.787 (0.375)***	5.776 (0.491)***	5.927 (0.434)***	5.954 (0.415)***	6.380 (0.347)***	6.072 (0.319)***	6.135 (0.343)***	6.233 (0.350)***
R ²	0.630	0.630	0.610	0.620	0.620	0.590	0.610	0.610	0.610	0.590
adj R ²	0.620	0.630	0.600	0.610	0.610	0.590	0.610	0.610	0.600	0.590

[표 8] 자영업자가구의 추정소득 결과

(단위: 개,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관 측 수	하위 10%	106	116	149	153	143	156	145	153	156	155
	10~20%	101	127	152	146	143	153	131	126	139	136
	20~30%	106	108	158	146	141	146	121	139	126	131
	30~40%	96	120	152	156	127	142	137	121	134	126
	40~50%	112	118	151	156	144	150	120	123	131	134
	50~60%	112	109	154	150	135	136	124	119	130	117
	60~70%	102	119	141	165	146	143	122	120	114	114
	70~80%	100	108	166	153	140	139	120	120	115	118
	80~90%	94	111	143	155	143	138	123	120	109	120
	상위 10%	112	113	155	154	125	129	128	106	114	117
	전 체	1,041	1,149	1,521	1,534	1,387	1,432	1,271	1,247	1,268	1,268
보 고 사 업 소 득	하위 10%	339	427	697	735	881	897	923	998	1,055	1,140
	10~20%	1,057	1,272	1,429	1,410	1,594	1,668	1,702	1,877	1,865	2,016
	20~30%	1,606	1,687	1,890	1,792	2,055	2,192	2,134	2,323	2,477	2,484
	30~40%	1,844	1,963	2,109	2,198	2,365	2,490	2,516	2,700	2,928	3,040
	40~50%	2,083	2,226	2,406	2,401	2,728	2,802	2,988	3,198	3,376	3,454
	50~60%	2,592	2,501	2,856	2,862	2,921	3,020	3,277	3,419	3,876	3,943
	60~70%	2,872	3,104	3,135	3,043	3,268	3,506	3,610	3,844	4,101	4,278
	70~80%	3,081	3,299	3,516	3,443	3,627	3,886	3,901	4,366	4,972	4,695
	80~90%	3,604	3,917	3,880	3,972	4,026	4,021	4,645	4,877	5,366	5,607
	상위 10%	4,345	4,612	4,750	5,505	5,011	5,811	5,738	6,618	7,649	7,403
	전 체	2,344	2,477	2,669	2,750	2,825	2,965	3,099	3,297	3,605	3,678
추 정 사 업 소 득	하위 10%	471	668	950	950	1,178	1,097	1,140	1,197	1,238	1,328
	10~20%	1,357	1,600	1,771	1,726	1,994	2,052	2,063	2,174	2,298	2,398
	20~30%	1,889	2,078	2,249	2,216	2,532	2,570	2,559	2,755	2,923	3,132
	30~40%	2,283	2,498	2,626	2,668	2,965	3,034	3,066	3,286	3,513	3,649
	40~50%	2,672	2,923	3,039	3,112	3,409	3,534	3,574	3,760	4,112	4,214
	50~60%	3,168	3,308	3,508	3,563	3,876	4,045	4,077	4,321	4,691	4,792
	60~70%	3,706	3,832	3,978	4,119	4,454	4,689	4,693	4,930	5,407	5,474
	70~80%	4,392	4,524	4,678	4,795	5,224	5,503	5,380	5,696	6,355	6,296
	80~90%	5,322	5,462	5,658	5,779	6,286	6,711	6,448	6,940	7,740	7,651
	상위 10%	7,912	8,222	8,890	8,700	9,693	10,600	10,057	10,039	12,230	11,333
	전 체	3,328	3,473	3,740	3,785	4,105	4,260	4,247	4,319	4,799	4,841

3. 소득 탈루율 분석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함수 추정결과를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추정소득을 도출하고, 이 추정소득과 보고소득간의 차이를 ‘소득 탈루’로 정의한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은 $(\text{추정소득}-\text{보고소득})/\text{추정소득}$ ³¹⁾이다.

다음 표는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자영업자가구의 2012년 소득 탈루율은 약 20.8%로, 국세청의 소득적출률(39%)보다 약 18.6%p 낮은 수치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상 소득적출률 수치는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면, 기존연구들의 추정치가 방법 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9]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정 결과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26.2	34.5	25.8	23.4	25.8	19.4	18.5	16.9	13.4	15.1
10~20%	22.6	20.5	19.1	18.1	20.1	18.9	17.5	13.6	19.0	15.9
20~30%	15.0	18.6	15.9	19.2	18.5	14.5	16.4	15.6	15.3	20.7
30~40%	19.2	21.4	19.6	17.6	20.2	18.0	17.9	17.9	16.7	16.7
40~50%	22.2	23.7	20.8	22.7	20.1	20.8	16.3	14.8	18.0	18.1
50~60%	18.1	24.3	18.6	19.6	24.7	25.2	19.6	20.8	17.4	17.7
60~70%	22.6	19.0	21.2	26.0	26.7	25.2	23.2	22.1	24.0	21.9
70~80%	29.8	27.0	24.9	28.2	30.7	29.3	27.3	23.3	21.7	25.3
80~90%	32.3	28.2	31.6	31.3	35.8	39.8	27.9	29.8	30.5	26.8
상위 10%	44.8	42.6	45.9	36.4	46.9	44.7	41.8	33.7	37.6	33.5
전 체	25.3	25.9	24.3	24.3	26.8	25.2	22.6	20.5	20.8	20.8

주: 1. 소득 탈루율=(추정소득-보고소득)/추정소득, 추정소득 및 보고소득은 사업소득 기준임

2.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소득 10분위 구분은 일치하지 않음

31) 추정소득 및 보고소득은 사업소득 기준이다.

[그림 1] 소득분위별 소득 탈루율

(단위:%)



추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 25%에서 2012년 21%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2003년 이전에는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20~30%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03년~2008년 사이에는 증감을 반복하는 등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³²⁾ 소득 탈루율은 대체로 고소득계층과 하위계층에서 중산층보다 높은 U자형을 보이고 있으나,³³⁾ 최근으로 올수록 저소득층의 소득 탈루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소득 탈루율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위 10~20%의 소득 탈루율은 22.6%

32) 소득분위는 추정소득 기준으로 10분위를 산출하였다.

33)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을 소득분위별로 추정된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김형준·박명호(2007)은 자영업자가구를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어 소득 탈루율을 추정된 결과 중산층의 탈루율이 가장 낮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탈루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준이지만, 소득이 20~30% 구간에서는 15.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상위 10% 구간에서는 44.8%의 높은 탈루율을 보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위 10~40%의 소득 탈루율은 15~16% 수준이지만, 상위 10% 구간에서는 33.5%의 탈루율을 보인다.

소득분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 탈루율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계층의 경우 소득 탈루율이 2003년 26.2%에서 2012년 15.1%로 42.4%(11.1%p)하락한 반면, 상위 10% 계층의 경우 소득 탈루율이 2003년 44.8%에서 2012년 33.5%로 25.2%(11.3%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소득 탈루율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고, 중산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낮을 가능성 때문이다.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신고 실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구간에서는 소득 탈루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추정소득’의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소득탈루시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탈루율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EITC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그룹의 영세 자영업자는 대부분 기장이 어려워 추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탈루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4. 소득세 탈루율 분석결과

소득세 탈루율은 자영업자가구의 추정소득으로부터 구한 세부담과 자영업자가구의 보고 소득으로부터 추정된 세부담간의 차이를 통해 추정한다. 세부담은 각 연도의 세법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상세한 설명은 부록I 참조).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가구단위가 아니고 개인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탈루율은 자영업자가구가 아니라 자영업자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³⁴⁾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였다면, 소득계층별로 소득 탈루 규모와 계층별 평균 실효세율을 곱해서 소득세 탈루규모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누진구조

34) 본 연구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가구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 탈루율 추정결과 역시 자영업자가가구주 기준 소득세 탈루율과 유사하다.

이기 때문에, 탈루된 소득세액을 추정할 때 보고소득과 누락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음 표는 자영업자가구주의 소득세 탈루율을 추정한 결과이다.³⁵⁾

첫째, 2012년 소득세 탈루율은 29.7%로, 소득 탈루율보다 높다. 소득세제가 소득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세 탈루율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소득 기준으로는 면세자이나, 추정소득 기준으로는 면세자가 아닐 경우 소득 탈루율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세 탈루율이 100%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보다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째, 소득 탈루율과는 다르게, 소득세 탈루율은 전년대비 증감을 반복하여,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소득세 탈루율은 2003년 33.4%에서 2006년 32.5%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7년 35.3%로 가장 높아진 후, 2010년 29.4%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29%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 탈루율과 달리, 소득세 탈루율이 2003년 이후 특별히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과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증가의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소득분위별 분포는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분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세 탈루율이 중산층보다 높은 U자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저소득층의 소득세 탈루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소득세 탈루율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하위 20~30% 구간을 제외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탈루율은 22%에서 44%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소득 탈루와 마찬가지로 고소

35) 여기서는 저소득자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는 면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동 분석에서 과세대상자로 설정됨에 따라 소득세 탈루율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탈루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면세자들도 탈루를 해서 면세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표본 편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가계동향조사의 자료에서 세금 계산프로그램을 구해 면세자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면세자들을 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탈루세액규모를 구할 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탈루세액규모는 1인당 탈루세액 * 인원수인데, 이 인원수에 면세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탈루세액에도 면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면세자를 빼고 1인당 탈루세액을 구한다면, 탈루세액은 더 커지고, 인원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세액 추정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득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을 가능성, EITC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졌을 가능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위그룹의 영세 자영업자는 대부분 기장이 어려워 추계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 탈루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표 10] 자영업자가구주의 소득세 탈루율 추정 결과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36.2	48.0	36.3	32.0	33.9	25.0	28.1	27.0	21.8	21.8
10~20%	29.2	26.4	28.0	25.7	28.9	27.0	26.8	21.2	28.5	24.7
20~30%	23.7	27.6	24.1	28.2	26.9	20.8	25.4	23.9	24.3	30.9
30~40%	26.8	29.1	27.9	26.0	28.9	26.1	26.8	26.6	23.7	24.0
40~50%	30.9	33.1	29.1	30.2	26.6	28.9	24.4	20.8	25.3	25.5
50~60%	24.6	32.6	24.8	26.2	32.4	33.5	27.4	29.7	25.1	24.4
60~70%	29.5	25.0	27.7	34.1	34.0	33.6	33.1	30.4	34.0	31.4
70~80%	36.8	34.3	31.9	35.9	39.5	39.2	37.1	31.8	31.0	35.9
80~90%	40.8	35.7	40.6	40.3	45.9	52.0	38.3	41.3	41.5	37.5
상위 10%	56.3	53.4	57.1	45.8	58.1	56.3	53.6	44.5	48.4	44.1
전 체	33.4	34.0	32.7	32.5	35.3	33.9	32.1	29.4	29.8	29.7

다음 표는 자영업자 가구주의 종합소득세 탈루규모를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기준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가구주 1인당 평균 207.8만원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탈루규모는 증가하며, 탈루규모는 상위 10% 계층에서 943.6만원이고 하위 10% 계층에서 10.2만원이다. 상위 10%의 소득세 탈루규모는 하위 10% 소득세 탈루규모 대비 약 93배로, 2003년 141배에서 감소한다. 2003 ~ 2012년 1인당 소득세 탈루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동 기간 1인당 결정세액 연평균 증가율 8.2%에 비해 낮다.

[표 11] 자영업자 가구주의 1인당 평균 소득세 탈루규모 추정 결과

(단위: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하위 10%	5.4	8.4	14.2	13.0	21.0	12.5	11.3	10.3	9.8	10.2
10~20%	22.5	27.8	36.1	31.3	46.6	40.5	33.9	28.7	41.1	36.3
20~30%	38.5	51.5	46.4	56.2	66.2	47.2	52.0	50.7	53.4	79.5
30~40%	57.7	74.6	71.6	65.3	84.1	77.1	71.3	71.5	70.4	75.6
40~50%	85.2	106.3	90.6	99.1	98.7	102.6	81.2	70.9	97.7	99.7
50~60%	86.3	121.3	96.4	102.2	137.6	140.5	108.8	115.7	119.9	123.1
60~70%	131.3	115.2	125.7	162.3	179.8	190.2	162.7	150.5	202.1	184.1
70~80%	206.2	187.3	172.6	202.1	265.4	276.1	240.5	212.6	245.1	262.3
80~90%	291.5	267.2	296.2	311.3	411.5	507.3	325.6	363.2	458.8	390.7
상위 10%	763.3	738.3	881.1	668.9	963.4	1,114.7	889.5	729.4	1,057.0	943.6
전 체	171.7	166.9	183.9	172.7	220.0	237.6	195.3	166.8	215.9	207.8

- 주: 1.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소득 10분위 구분은 일치하지 않음
 2. 탈루세액은 탈루사업소득 외에도 탈루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3. 본 통계는 가구주만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세액이 낮은 배우자, 기타 가구원을 포함할 경우, 평균 탈루세액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IV. 결 론

본 보고서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소득 분위별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3~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실제 소득과 소득 탈루율을 추정하고, 소득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제소득과 보고 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소득세 탈루율을 추정하였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에 대한 추정은 성명재(2008), 박명호(2010) 등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탈루율을 추정하는 경우의 오차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추계한 소득세가 실제 소득세 세입 실적에 근접하다면, 탈루율 추정 결과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적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떤 가정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계하였는지, 소득세를 추계한 결과가 소득세 세입 실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금 계산 프로그램이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단순히 계산하는 계산기(calculator)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금 계산 프로그램 과정을 보고한 경우에도 단순한 가정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세수가 실제 세수와 괴리가 크다면, 소득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정한 소득세나 세제개편 효과의 정합성은 떨어지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수를 추계할 경우, 각종 제한적 가정들을 최대한 개선하여, 소득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세수가 실제 세수와 크게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가능한 한 충족시켰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의 탈루율을 소득 분위별로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탈루율이 소득 분위별로 다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존 연구들 중에서 탈루율을 소득 분위별로 추정한 연구는 김형준·박명호(2007), 성명재(2008, 2011), 전승훈·신영임(2009)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2003~2012년의 탈루율을 추계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시계열을 가장 최근까지 연장시켰으며, 10년 동안의 시계열을 추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세 탈루율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는 2008년까지의 추이만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후의 소득 탈루율은 연구별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편차가 큰 편이어서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서도 2003~2008년 사이의 소득 탈루율은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2008~2012년 사이에는 뚜렷한 소득 탈루율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소득적출률(39%)보다는 낮은 수치인데, 이는 세무조사 결과상 소득적출률 수치가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면, 기존연구들의 추정치가 방법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 약 25%에서 2012년 약 2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는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20~30%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2003년~2008년 사이에는 증감을 반복하는 등 뚜렷한 추이를 발견하기 힘들며, 2008년 이후에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고소득계층과 하위계층에서 중산층보다 높은 U자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탈루율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원인으로 우선 고소득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신고 실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구간에서는 소득 탈루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추정소득’의 절대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EITC 도입 및 2008~2009년 유가환급금 정책 실시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그룹의 영세 자영업자는 대부분 기장이 어려워 추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금탈루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넷째, 2012년 기준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가구주 1인당 평균 207.8만원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탈루규모는 증가하며, 상위 10%의 소득세 탈루규모는 하위 10% 소득세 탈루규모 대비 약 93배에 달한다. 2003 ~ 2012년 1인당 소득세 탈루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동 기간 1인당 결정세액 연평균 증가율 8.2%에 비해 낮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소득 탈루율 축소를 위한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소득자의 탈루율 축소에 중점을 둘 경우, 실질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 정의의 확보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단,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는 초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규모나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 부록 I: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소득세 추계방법

1. 개 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편성시 거시 변수를 사용하여 각 세목을 추계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수 추계를 하게 될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의 귀착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개편에 수반되는 재정비용 추계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소득세 정책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들 때문에 미국의 CBO나 JCT에서도 예산 편성시에는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세수 추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샘플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별 소득과 지출 및 가구의 인적 구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간접적인 소득세 계산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 신축 아파트조사구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1만 이상의 일반가구를(2012년 10,401가구) 매월 면접 및 자기기입방식을 통하여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의 측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통계자료이다.

기존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추정하는 연구는 대부분 소득세를 직접 추정하였다기 보다는 세금 계산을 통해 탈루율 및 세제개편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이다.³⁶⁾ 때문에 소득세 구성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고, 구성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가정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소득세 추정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로소득공제, 가구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표준공제와 비교하여 적용하거나, 표준공제를 일괄 적용)를 적용해서 구한

36) 본문의 기존문헌연구 참고

과세표준, 명목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였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추계금액이 소득세 국세수입액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만약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추정한 소득세 금액이 거시자료의 소득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분석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명재(2008)는 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추정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의 차이를 탈루율로 가정하였다.

2. 소득세 과세체계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사항들 및 가정

다음은 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항목별로 세법 내용, 가계동향조사 항목, 세법과 가계동향조사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³⁸⁾ 여기서 제도 설명은 분석의 마지막 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

[표 12] 소득세의 계산구조

계산구조	각 소득금액별 계산과정							
총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계산 [A]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비과세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귀속 법인세	(-)필요경비	(-)근로 소득공제 [B]	(-)연금 소득공제	(-)필요 경비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 소득금액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근로 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퇴직	(-)양도

37) 현진권·임병인(2002), 안중범외 3인(2006), 전승훈(2007), 안중범외 2인(2010), 성명재·박기백(2008), 성명재·전영준(2008) 등

38) 소득세법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상엽·정정운(2013), 「세법개론」을 참고

계산구조	각 소득금액별 계산과정				
소득공제	공제항목		적용여부	소득공제	소득 기본 공제
	인적	기본(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O		
	공제	추가(경로우대, 부녀자, 6세이하, 다자녀)	O		
	[C]	추가(장애자, 한부모, 출산/입양공제)	X		
	특별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장성)	O		
	공제	보험료(장애인보장성)	X		
	[D]	의료비, 교육비	O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월세소득공제)	O		
		주택자금(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X		
		기부금	O(종교)		
	[E]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등)		O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X		
	퇴직연금소득공제*		X		
	[F]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O		
	[G]연금저축 소득공제		O		
	기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X		
	[H]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X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X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X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X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X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X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X		
	표준공제		O		
= 과세표준	[I] 종합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세율	[II] (x)기본세율			(x)기본세율	(x)기본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구조	각 소득금액별 계산과정																																											
(-)세액 감면,공제	(-)세액감면,공제																																											
	<table><tr><th colspan="2">공제항목</th><th>적용여부</th></tr><tr><td rowspan="15">세액공제</td><td>배당세액공제</td><td>X</td></tr><tr><td>기장세액공제</td><td>X</td></tr><tr><td>외국납부</td><td>X</td></tr><tr><td>재해손실세액공제</td><td>X</td></tr><tr><td>[K]근로소득세액공제</td><td>O</td></tr><tr><td>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td><td>X</td></tr><tr><td>기부정치자금</td><td>X</td></tr><tr><td>납세조합징수</td><td>X</td></tr><tr><td>성실사업자 표준</td><td>X</td></tr><tr><td>성실사업소득자 수입금액증가</td><td>X</td></tr><tr><td>고용창출투자</td><td>X</td></tr><tr><td>수입금액증가</td><td>X</td></tr><tr><td>전자신고</td><td>X</td></tr><tr><td>성실신고확인</td><td>X</td></tr><tr><td>기타</td><td>X</td></tr><tr><td rowspan="3">세액감면</td><td>창업중소기업</td><td>X</td></tr><tr><td>중소기업특별</td><td>X</td></tr><tr><td>지방이전중소기업</td><td>X</td></tr></table>		공제항목		적용여부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X	기장세액공제	X	외국납부	X	재해손실세액공제	X	[K]근로소득세액공제	O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X	기부정치자금	X	납세조합징수	X	성실사업자 표준	X	성실사업소득자 수입금액증가	X	고용창출투자	X	수입금액증가	X	전자신고	X	성실신고확인	X	기타	X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X	중소기업특별	X	지방이전중소기업	X	
	공제항목		적용여부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X																																									
		기장세액공제	X																																									
		외국납부	X																																									
		재해손실세액공제	X																																									
		[K]근로소득세액공제	O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X																																									
		기부정치자금	X																																									
		납세조합징수	X																																									
		성실사업자 표준	X																																									
		성실사업소득자 수입금액증가	X																																									
		고용창출투자	X																																									
		수입금액증가	X																																									
		전자신고	X																																									
		성실신고확인	X																																									
		기타	X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X																																									
		중소기업특별	X																																									
지방이전중소기업		X																																										
	(-)세액 공제	(-)세액 감면,공제																																										
=																																												
결정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퇴직소득 결정세액																																										
+가산세	-	-																																										
=총 결정세액	-	-																																										
-기납부 세액	-	-																																										
=차감납 부할세액	-	-																																										

주: 이자, 배당,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추계에서 제외함

A. 소득의 정의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소득세를 추계할 때 사용한 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원천분리과세 소득으로 가정하여 종합소득세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2012년까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기준은 4천만원이었다. 2013년부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구는 가계동향조사의 샘플이 거의 없어, 소득세 추계에서 제외하였다.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국처럼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 공제,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연금소득이 사실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액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비과세소득 역시 자료의 한계로 소득세 계산시 고려하지 않았다.

가계동향조사 항목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해서는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소득이 분리되어 있으나, 주택 등 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기타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비경상소득에 대해서는 가구원 별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가구주 소득은 가구주 근로소득, 가구주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으로 보았고,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 근로소득, 배우자 사업소득, 기타가구원 소득은 기타가구원 근로소득과 기타가구원 사업소득의 합계로 가정하였다.

근로소득은 급여소득과 상여금으로 나뉘는데, 상여금은 비정기적 소득이므로 조사된 총합계액을 연간자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사된 항목들의 월평균 금액을 구한 후 12를 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은 상여금을 비정기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³⁹⁾

39)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월평균자료×12의 방법으로 연간 자료를 구성하되, 상여금이나 의료비 지출 등 비정기적 소득 또는 지출자료는 조사된 총합계액을 연간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전소득(공적연금소득,⁴⁰⁾ 기초노령연금소득, 가구간 이전소득 등) 및 비경상소득(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 비경상소득 및 차익을 알 수 없는 수입항목)들은 비과세이거나 소득세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사회수혜금, 사회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기타이전소득 등도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세액계산에서 제외된다.

$$\text{가구주 소득} = \text{가구주 근로소득} + \text{가구주 사업소득} + \text{가구 주택 등 임대소득} \\ + \text{가구 기타재산소득}$$

$$\text{배우자 소득} = \text{배우자 근로소득} + \text{배우자 사업소득}$$

$$\text{기타가구원 소득} = \text{기타가구원 근로소득} + \text{기타가구원 사업소득}$$

40)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소득 또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구분되지만, 2009년에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아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제 20조 3항 제 5호에 의하면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규정상 10년 이상의 장기간 가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과세"대상연금소득으로 가정하는 경우 (총액=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월 지급액*12) 60세 이상의 가구원 중 미취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안분, 단: 60세 이상 가구원이(가구주 배우자 포함) 1인인 경우 그에게 모두 부여. 공적 연금소득의 필요경비를 제하고 연간 인 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사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 13] 가계동향조사 소득 항목의 구성

가계동향조사 항목 코드	항 목	포함여부
A	소득	
B2	경상소득	
B4	근로소득	
B410	가구주소득	가구주소득
B420	가구주급여소득	
B430	가구주상여금	
B440	배우자소득	배우자소득
B450	배우자급여소득	
B460	배우자상여금	
B470	기타가구원소득	기타가구원소득
B480	기타가구원급여소득	
B490	기타가구원상여금	
B5	사업소득	
B510	가구주사업소득	가구주소득
B520	배우자사업소득	배우자소득
B530	기타가구원사업소득	기타가구원소득
B540	주택 등 임대소득	가구주소득
B6	재산소득	제외
B610	이자소득	제외
B620	배당소득	제외
B640	개인연금수입	제외
B650	퇴직연금수입	제외
B690	기타재산소득	가구주소득
B7	이전소득	제외
B710	공적연금	
B720	기초노령연금	
B730	사회수혜금	
B740	사회적현물이전	
B750	세금환급금	
B760	가구간이전	
B770	할인혜택	
B790	기타이전소득	
B8	비경상소득	제외
B810	경조소득	
B820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B890	기타비경상소득	

B.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이다. 본 분석에서는 아래 세법에 따라 계산하였다.

[표 14] 근로소득공제제도 변화(1)

(단위: 만원)

총급여	1991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액/30% 기준점	230	250	270	310	400	500
한 도	490	600	620	690	800	900

[표 15] 근로소득공제제도 변화(2)

총급여	1999	2001	2002	2003	2004	2009
500만원 이하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80%
500~1500만원	40%	40%	45%	47.5%	50%	50%
1500~3000만원	10%	10%	15%	15%	15%	15%
3000~4500만원	10%	10%	10%	10%	10%	10%
4500만원~	10%	5%	5%	5%	5%	5%
한 도	120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 인적공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공제 등 추가 공제 제도,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가 있다.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부녀자 공제, 6세 이하 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공제금액이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만큼 공제를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제외하면 가구주나 배우자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⁴¹⁾)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 때 가구주와 배우자 둘 중 소

특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는 연구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가구주가 모두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중 ‘가구주’는 ‘호적 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중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공제, 출산입양자공제는 자료부족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표 16]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단위: 만원)

		1996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기본 공제	본인공제	100	→	→	→	→	→	→	150	→
	배우자공제	100	→	→	→	→	→	→	150	→
	부양가족공제	100	→	→	→	→	→	→	150	→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50	100	100/150 (65세~/ 70세~)	→	→	→	→	100 (70세~)	→
	장애인공제	50	100	→	200	→	→	→	→	→
	부녀자공제	50	→	→	→	→	→	→	→	→
	6세 이하 공제	50	→	100	→	→	→	→	→	→
	출산·입양공제	-	-	-	-	-	-	신설 200	→	→
	한부모공제 ¹⁾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50 (1인/ 2인)	→	→	→	→	폐지	-	-	-
다자녀추가공제		-	-	-	-	-	신설 50+ (자녀수 -2)*50	→	→	100+ (자녀수 -2)*200

주: 1) 한부모공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41) 소득세법 제 50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 17]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의 요건

	공제대상자	요건	
		나 이	연간소득금액합계 ¹⁾
본인공제	해당거주자	-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60세이상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20세이하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20세이상/60세이상	100만원 이하
	생계급여등 수급자	-	100만원 이하
	위탁아동	-	100만원 이하

주: 1)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기준임. 예를 들어, 2012년
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일 때, 총급여는 500만원임

D.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차원리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 크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된다.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표준공제 연간 100만원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본 분석에서는 모든 비근로소득 거주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표준공제 연간 60만원을 적용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에 속하는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성실사업자는 자료의 한계로 구분할 수 없어,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표 18] 특별공제의 기본 구조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 100만원)중 선택 *항목별 공제의 종류: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기부금 공제+표준공제(연 60만원, 성실사업자는 연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특별공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하며, 세법상 보험료 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액공제 된다.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법률에 따라 계산하였다. 보장성보험료는 가계조사항목을 활용하였다.

[표 19] 보험료 특별공제 한도

		1993	1996	1999	2000	2012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	→	좌동
	보장성보험료	50만원	→	70만원	100만원	좌동
	장애인보장성보험료	-	-	-	100만원	좌동

[표 20] 4대보험 보험료율

(단위: %)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국민연금 보험	
		근로자 부담		근로자 부담		근로자 부담		근로자 부담
2000	2.8	1.4	1	0.5	-	-	9	4.5
2001	3.4	1.7	1	0.5	-	-	9	4.5
2002	3.63	1.815	1	0.5	-	-	9	4.5
2003	3.94	1.97	0.9	0.45	-	-	9	4.5
2004	4.21	2.105	0.9	0.45	-	-	9	4.5
2005	4.31	2.155	0.9	0.45	-	-	9	4.5
2006	4.48	2.24	0.9	0.45	-	-	9	4.5
2007	4.77	2.385	0.9	0.45	4.05	2.025	9	4.5
2008	5.08	2.54	0.9	0.45	4.05	2.025	9	4.5
2009	5.08	2.54	0.9	0.45	4.78	2.39	9	4.5
2010	5.33	2.665	0.9	0.45	6.55	3.275	9	4.5
2011	5.64	2.82	1.1 ¹⁾	0.55	6.55	3.275	9	4.5
2012	5.8	2.9	1.1	0.55	6.55	3.275	9	4.5
2013	5.89	2.945	1.3 ²⁾	0.65	6.55	3.275	9	4.5

주: 1.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보험요율(본인이 전액부담)

2.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

1) `11.4이후 ; 2) `13.7이후

자료: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AB0203?purl=/static/html/wbda/b/wbdab0203.html, <http://taxpro82.blog.me/90176846476>

건강보험

우선, 건강보험은 월보수액의 5.8%이며, 이 중 근로자부담은 2.9%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12로 보수월액을 계산하여, 각 해의 보험료율과 상한선을 적용하여 월 보험료를 계산하였다. 각 해의 보험료를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초기에는 상한선이 있다가 1986년 철폐하였고, 2002년부터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2002년 이전에는 상한선이 없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1989년부터 상한선을 설정해 운영해왔다.

[표 21] 건강보험: 직장표준월급여액 및 보험료율,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현황
(단위: 원, %)

	보험료율		연평균 표준 월 급여액			지역 점수당금액
	전체	근로자부담	소계	근로자	공·교	
2003	3.94	1.97	2,262,972	2,125,033	3,014,165	115.8
2004	4.21	2.105	2,359,857	2,198,925	3,208,075	123.6
2005	4.31	2.155	2,457,354	2,321,757	3,213,611	126.5
2006	4.48	2.24	2,548,768	2,401,260	3,405,784	131.4
2007	4.77	2.385	2,617,608	2,476,864	3,490,891	139.9
2008	5.08	2.54	2,723,201	2,595,209	3,556,102	148.9
2009	5.08	2.54	2,765,763	2,628,345	3,690,564	148.9
2010	5.33	2.665	2,754,174	2,615,728	3,720,583	156.2
2011	5.64	2.82	2,936,227	2,812,011	3,845,927	165.4
2012	5.80	2.9	3,069,938	2,944,351	4,025,314	170.0
2013	5.89	2.945	-	-	-	-

- 주: 1. 직장은 연평균 보수월액임
 2. 보험료율은 각 연도말 기준임
 3. 지역보험료는 2002.1월부터 부과등급별 보험료 합산 방식에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뀜
 4. 연평균 직장 표준 월급여액은 월평균 보험료 및 보험료율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식을 사용함
 - 연평균 표준 월급여액 = 해당 항목 월평균 보험료(p.27 참고)/보험료율*2
 - 해당 항목 월평균 보험료는 소수점까지 사용하여 산식 계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2년 건강보험주요통계』

[표 22] 건강보험료 소득 상하한선

			2000.6.23. 제정 (시행 2000.7.1.)	2001.12.31. (시행 2002.1.1.)	2006.12.30. (시행 2007.1.1.)	2011.6.30. (시행 2011.6.30.)	2012.8.31. (시행 2012.9.1.)
직 장 가 입 자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	-	5,080만원	6,579만원	7,810만원	좌동
		최저	28만원	28만원	28만원	28만원	좌동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	-	-	-	-	7,810만원
		최저	-	-	-	-	-
지 역 가 입 자	부과점수	최고	-	11,000점	11,000점	12,680점	좌동
		최저	-	35점	20점	20점	좌동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연간 급여총액의 1.1%이며 이 중 근로자 부담은 0.55%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이며, 이중 근로자부담은 3.275%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08.7.1.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까지는 (1)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세대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4.78%(장기요양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본인이 부담(세대 단위)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부담한다. 2010~201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상향조정되었다.

보장성보험료·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보고하고 있는 생명보험료 지출액(hh_U620) 및 화재보험료 지출액(hh_U640)을 활용하여, 본 분석에서는 위 두변수를 가구주가 모

두 지출한다고 가정하고,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었다.⁴²⁾ 장애인보장성보험료는 자료가 없어서 적용하지 못하였다.

〈의료비 공제〉

현행 세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때 포함되는 내용은 진찰,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치과,한의원포함), 장애인보조기,시력교정용 안경/렌즈(1인당 연50만원한도), 보청기구입비용, 미용을 위한 의료비,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및 의료비 등이다. 동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 23] 특별공제 제도 변화

		1993	1996	1999	2000	2002	2003	2004	2009
의료비	본인·노인(65세+)·장애인	급여 3% 이상	→	3% 이상 200만원	3% 이상 300만원	→	3% 이상 500만원	3%이상 전액	→
	부양가족 ¹⁾	100만원						3% 이상 500만원	3% 이상 700만원

주: 1) 2004년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본인·노인·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 주지 않음. 노인·장애인 등에 지출한 의료비로 인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초과 지출 의료비와 노인·장애인 지출의료비 중에서 작은 금액을 기존 공제한도에 추가하여 공제해 줌

본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조제양약, 판매양약, 한약 및 한약재, 의료용 소모품, 기타보건의료기구, 안경 및 콘택트,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비용을 사용하였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없으나 그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연700만원이다. 그러나 가구원 의료비지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700만원 한도는 무시하고 계산하였다.⁴³⁾

42)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보험료 공제 중 연간 100만원 한도의 보장성보험료공제는 가계동향 자료상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확인할 수 있고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여부를 알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 지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만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표 24] 가계동향조사 의료비 항목의 구성

가계동향조사 항목 코드	항 목	포함여부
N	06. 보건	
N1	의약품	-
N110	조제양약	O
N120	판매양약	O
N130	한약 및 한약재	O
N140	인삼	X
N190	영양보조제	X
N2	기타 의약품	O
N220	보건의료 소모품	O
N3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O
N320	안경 및 콘택트	O
N390	기타보건의료기구	O
N4	외래의료서비스	O
N420	일반병의원외래비	O
N440	한방병원외래비	O
N5	치과서비스	O
N520	치과외래비	O
N6	기타의료서비스	O
N690	기타보건의료서비스	O
N7	입원서비스	O
N720	병원입원치료비	O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이 없다)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와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한다. 이때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을 공제한다. 해당거주자의 경우에는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가 전액 공제된다.

- 43)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 주지만, 가계동향자료에서는 개인별 의료비 지출액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누구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구원에게 균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25] 교육비 특별공제 한도 변화

(단위: 만원)

		1993	1996	1999	2000	2002	2003	2004	2009
교육비 (1인당)	본인	전액	→	→	→	→	→	→	→
	취학전아동	-	70만원	100	→	→	150	200	300
	초중고	전액	→	150	→	→	200	200	300
	대학	-	230만원	300	→	→	500	700	900
	장애인특수교육	-	-	-	-	150	전액	→	→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교육비는 가구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혹은 가구주)의 학력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를 나누어 배분하였다.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은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되는데, 취학전 아동은 유치원비(hh_S220), 초중고생은 초등학교(hh_S240), 중등교육(hh_S3), 학교보충교육비(hh_S820), 교복구입비(hh_K130, hh_K135)⁴⁴⁾를 공제하였다.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1인당 연300만원 이내이며, 교복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대학생 1명당 연900만원 이내의 학비(전문대학(hh_S420), 국공립대학(hh_S440), 사립대학(hh_S460))을 공제하였다. 가구주만 대학/대학원 재학일 경우에 근로자본인의 대학,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액공제(평생교육원(hh_S840), 국내 교육연수(hh_S860))가 된다. 가구주가 대학원재이면서 배우자와 기타가구원은 대학원재가 아닌 경우만 고려해 대학원비를 공제하였다. 국외연수비와 학원비변수는 가구단위라 취학전아동만 구분할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으며,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되지만, 자료부족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44) 2009년 귀속 기준부터 공제된다.

[표 26]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항목의 구성

가계동향조사 항목 코드	항 목	포함여부
S	10. 교육	
S1	정규교육	O
S2	초등교육	O
S220	유치원	
S240	초등학교	
S3	중등교육	O
S320	중학교	
S340	고등학교	
S4	고등교육	O
S420	전문대학	
S440	국공립대학	
S460	사립대학	
S480	대학원	가구주만 고려
S5	학원 및 보습교육	X
S6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X
S610	입시 및 보습	
S620	음악학원	
S630	미술학원	
S640	운동학원	
S650	직업준비학원	
S660	방문학습지	
S670	체험교육	
S680	기타학원교육비	
S690	개인과외비	
S7	성인학원교육	X
S720	성인직업학원	
S740	외국어학원	
S760	운동 및 교양교육	
S8	기타교육	
S820	학교보충교육비	O
S840	평생교육원	O(가구주가 대학원재인 경우)
S860	국내교육연수	O(가구주가 대학원재인 경우)
S880	국외연수비	X
K	의류 및 신발	
K130	남학생 교복	O
K135	여학생 교복	O

〈주택자금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표 27] 주택자금공제, 2013

주택자금공제=Min(A,B)	
A: 공제대상액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40%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50%]*+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 의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	
B: 공제한도액: 연 500만원(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1,500만원)	

[표 28] 월세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혁

(단위: %, 만원)

	2003	2004	2009	2010	2012
월세액 소득공제 (2010~)	-	-	-	신설: 월세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총급여3000 만원이하	- *총급여 5000만원이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2000.11~)	600 (만기 10-15년) 1000 (15년 이상)	1000 (만기 15년 이상)	1000 (만기 15-30) 1500 (만기 30년 이상)	-	500(15년이상) 1500(15년 이상, 70%이상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이 항목에서는 주택마련저축액(저출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지급액의 4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 500만원 이내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공제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의 한계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지급액의 40% 만 고려하였다.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가구거주정보를 토대로 현재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무주택상태로 주택대출이자+부동산대출상환금액이 (+)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주에 한하여 가구 주택이자지출 및 대출상환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액을 계산하였다.⁴⁵⁾

또한 월세공제는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월세액의 40%를 공제하였다.

[표 29] 가계동향조사 주택자금 관련 항목의 구성

가계동향조사 항목 코드	항 목	포함여부
W6	이자비용	X
W620	주택대출이자	O
W640	기타이자	X
X220	부동산 대출상환	O
-	월세(사글세)	O

45) 한편,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전용 85 제곱 미터 이하의 자가주택거주가구의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납세주로 제한하였다. 또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세법요건과 관련하여 09년 기준시가의 실거래가 반영율을 평균 80%라 가정하였을 때 실거래 가격은 3억6천만 원 이하이고, LTV/DI 적용 및 일반적인 대출은행상 시가의 50%이하로 대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09년 평균시중은행대출이자율 5.65%를 적용하는 경우 연간 대출이자 지출액은 최고 1017만원이다($3 \times (1.2) = 3.6 \text{억} / 2 = 1.8 \text{억} \times 5.65\% = 1017 \text{만 원}$). 따라서, 가구 주택대출이자금액이 101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납세주에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적용하였다.

〈기부금 공제〉

현행 소득세법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산입방법과 기부금 공제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가 공제된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가 공제된다.

가계동향조사 항목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종교기부금만 공제처리하였다. 가구원 수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구주가 기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적용한도는 (종합소득금액 $\times$ 10/100 + 소득금액 5/100)과 종교기부금지출액 중 작은 금액이다.

[표 30] 가계동향조사 주택대출 이자, 이자비용 항목의 구성

가계동향조사 항목 코드	항 목	포함여부
W820	종교기부금	O
W840	회비 및 기타기부금	X

E.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 등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및 기여금전액을 공제한다.

가계동향자료에서는 국민연금기여금 및 기타연금기여금 가계지출정보를 제공하지만, 개인별 연금의 종류와 가입여부를 알 수 없다. 단, 가계동향자료의 직업 분류자료에서 군인을 구분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군인연금기여금은 계산할 수 있다. 이외에 가계동향자료를 통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이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군인연금 외에 직연금가입자의 공제금액은 낮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표 31] 2012년 공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제도 요약

		연금보험료 계산식 (가입자 부담분)	기준소득월액 계산 대상이 되는 소득의 연도	소득 상한/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5%	2012.1-6: 2010년 소득총액 2012.7-12: 2011년 소득총액	23~24만원/ 360~389만원
직 역 연 금	공무원연금	보수월액 * 8.5% (기준소득월액 * 5.525%)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65%	2008년 기준소득에 성과급여 등 6개 항목 조정 후 2009년 공무원보수인상률 감안	없음
	군인연금	보수월액 * 8.5% (기준소득월액 * 5.525%)		
	사학연금	보수월액 * 8.5% (기준소득월액 * 5.525%)	2009년 공무원보수인상률 감안	
	별정우체국 근로자 본인 부담금	보수월액* 8.5%		

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vs.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차이: ①국민연금은 임금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은 반영 ② 두 경우 모두 과세소득금액이나, 근거 법령의 차이로 정의에 차이가 존재(소득세법 12조 4호 vs. 공무원보수관계법령)

국민연금기여금 계산: 200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표에 따라 국민연금 기여금을 산정하였으나, 2008년부터 전년도 신고소득금액/근로일수*30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 후, 전년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 후, 이에 연금보험료율을 반영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먼저, 직업정보를 통하여 직업군인을 제외한 후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 연금보험료율(근로소득 4.5%, 사업소득 9.0%)을 적용하였으며, 총소득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반영하였다.⁴⁶⁾⁴⁷⁾

46)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그의 총연간급여액/(2008년+2009년 평균근로시간/2)*30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자로 만 55세 이하인 경우 4.5%, 그 외 근로소득이 없는 55세 미만의 종합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가정하여 9%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47) 본 분석에서 상반기는 전전년도(t-2) 소득기준, 하반기는 전년도(t-1) 소득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표 32] 국민연금 제도 요약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¹⁾	연금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기준소득월액 계산 대상이 되는 소득의 연도
~2007.12	표준소득월액 ²⁾	-	-
2008.1~2009.6	기준소득월액	22만원/ 360만원	2007년 소득총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계산 (2008년 재확인 필요)
2009.7~2010.6	기준소득월액	22만원/ 360만원	2008년 소득총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계산
2010.7~2011.6	기준소득월액	23만원/ 368만원	2009년 소득총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계산
2011.7~2012.6	기준소득월액	23만원/ 375만원	2010년 소득총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계산
2012.7~2013.6	기준소득월액	24만원/ 389만원	2011년 소득총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계산

주: 1.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4.5%)

1)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고, 전년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2) 표준소득월액: 2007년까지는 소득을 일정구간으로 등급화한 후, 소득구간별(등급별)대표값을 소득월액으로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함

군인연금기여금 계산: 직업군인의 경우 그의 연근로소득/12=보수월액*8.5/100
= 기준소득월액 * 5.525/100= 월기여금*12를 계산한다. 군인연금은 2013년부터 연
금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월평균과세소득)으로 변경되었는데, 보수
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약 65%수준이다.⁴⁸⁾

[표 33] 군인연금 보험료율 연혁

	연금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	본인 부담 보험료율
1996~1998	보수월액	6.5%
1999~2000	보수월액	7.5%
2001~2009	보수월액	8.5%
2010~2012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65%)	8.5% (5.525%)
2013~	기준소득월액	7.0%

48)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동 연금산정기준 변경이 2010년부터 실시되었다.

[표 34] 가계동향조사 연금관련 지출 항목의 구성

가계동향조사 항목 코드	항 목	포함여부
W3	연금	O
W320	국민연금 기여금	O
W390	기타연금 기여금	O
W4	사회보장	O
W420	건강보험료	O
W490	기타사회보험료	O

F.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소득공제

근로자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체크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분 30%)를 총급여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중 적은금액(연 1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동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가구원별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비지출액을 알아야 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용가능한 소비지출액은 가구당 금액이기 때문에, 가구원별 소비지출을 추정하기 위해 가구총소비지출에 가구총소득대비 각 가구원별 소득 비중을 반영하였다. 가구주소득은 가구주근로, 가구주사업, 가구주택 등 임대소득, 가구기타재산소득으로 하였으며, 배우자소득은 배우자근로, 배우자 사업소득으로, 기타가구원소득은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기타가구원사업소득으로 추정하였다. 이 세 가지를 합한 총소득에서 각각의 구성원이 차지하는 소득비율을 총소비지출에 곱하여 각 구성원별 소비지출액을 추정하였다. 단, 기타가구원이 복수인 경우 기타가구원 중 취업자 수로 나누워 기타가구원 1인당 소비지출액을 추정하였다.

각 가구원별 총소비지출에 각 연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비중(2012년 기준 91.0%)을 반영하여 각 가구원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각 가구원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2012년 기준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동 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거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였다. 전통시장사용분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우대공제율은 자료의 한계로 따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표 35]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단위: 조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민간최종소비지출		
	A	B	C	A/C	(A+B)/C
1990	5.3	-	96.9	5.5	-
1994	18.9	-	182.6	10.4	-
1998	30.8	-	252.1	12.2	-
1999	42.6	-	290.0	14.7	-
2000	79.5	-	330.4	24.1	-
2001	135.3	-	364.3	37.1	-
2002	174.0	-	408.7	42.6	-
2003	170.5	-	420.1	40.6	-
2004	167.0	-	435.1	38.4	-
2005	192.5	18.6	465.4	41.4	45.3
2006	258.7	30.6	494.9	52.3	58.5
2007	301.2	50.3	530.3	56.8	66.3
2008	339.6	61.6	561.6	60.5	71.4
2009	379.5	68.7	576.0	65.9	77.8
2010	456.9	76.0	617.0	74.1	86.4
2011	495.6	80.9	655.4	75.6	88.0
2012	537.3	82.4	680.8	78.9	91.0

주: 1. 해당연도 중 신용카드사에서 통보받은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만, 신용카드사로부터 과세자료 활용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과 다름

2.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1.1일부터 시행함

자료: 국세통계연보(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서), 각 연도, 국민계정

[표 3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혁

	공제대상 카드범위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기준	공제금액 (공제율)	공제한도
1999 도입		총급여액의 10% 초과액	초과금액의 10%	300만원
2001		10%	20%	500만원
2003	신용카드, 직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	10%	20%(신용카드) 30%(직불카드만)	500만원
2004	신용카드, 직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 기명식선불카드	15%	20%	500만원
2005년 소득	신용카드, 직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15%	20%	500만원
2006	(상동)	15%	15%	Min[500만원,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0%]
2008	기명식 전자화폐,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 선불카드 추가	20%	20%	(상동)
2010	(상동)	25%	20%(체크·직불· 선불카드는 25%)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2011	(상동)	25%	(상동)	Min[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총급여액의 20%]
2012	(상동)	25%	20%(체크·직불· 선불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은 30%)	(상동)
2013	(상동)	25%	15%(현금영수증, 체크·직불·선불카 드, 전통시장 사용분은 30%, 대중교통비 30%(100만원한도))	(상동)

G.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2000.12.31.이전 가입분에 대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로 이는 불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00.1.1.이후 가입분에 대한 연금저축소득공제로 이는 불입금액 전액을 퇴직연금보험료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계동향조사자료에는 연금보험료(U660)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나, 가구원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본 분석에서는 가계동향조사자료의 연금보험료 전액이 가구주가 납부한 것이며, 모두 2001년 이후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4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가구주 소득에서 공제하였다.

****참고: 국회예산정책처(2010)**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만을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의 종합과세소득 편입에 따른 조세특례인데 반하여 본고에서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여러 합리적 가정하에서 연금소득 자체를 제외했기 때문에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앞으로 발생할 종합소득과세대상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산에 포함하였다.

[표 37] 연금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금액(가입자 본인의 추가 납입금액) 1)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 400만원

[표 38] 가계동향조사 연금저축관련 구성

가계동향조사 항목 코드	항 목	포함여부
U6	보험	보험료는 명칭에 따라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즉, 주거관련보험, 건강관련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으로 나뉨.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분리하지 않고 주위험을 보장하는 것에 분류함
U620	생명보험	질병, 사망에 따른 보상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보험회사 및 유사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U640	화재보험	화재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충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U660	연금보험	향후 일정 계약조건이 만족되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보험
U680	운송관련보험 등	운송기구(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보험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설명

[표 39] 개인연금저축제도 및 연금저축제도 요약

	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가입기간	저축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에 2000.12.31까지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2001.1.1이후 가입한 거주자에게 적용
소득공제 금 액	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불입액 전액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가입대상	만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방 법)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 동

	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연금 수령시	비 과 세	과 세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해지추징세액 부과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기타소득세 20% 원천징수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2% 해지가산세 부과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탁 등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H.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계동향조사에는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로 추정 가능한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추정하였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았다.(이 두항목에 대한 설명은 F와G 참조)

[표 4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제항목		적용여부
기타 [H]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제16조)	X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제30조의3①)	X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제30조의3③)	X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제86조)	X
	연금저축공제(제86조의2)	O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86조의3)	X

공제항목		적용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87조)	X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제88조의4)	X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제88조의4 제13항)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제91조의9)	X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제122조의3)	X
	문화진흥기금출연금 기부금(제73조 제1항 제1호)	X
	기부금의 과세특례(제73조, 특례기부금)	X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제73조 제1항 제11호)	X
	정치자금 소득공제(제76조)	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O

I. 종합소득공제 배제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투자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종합한도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J. 세율 및 결정세액

앞서 설명한 모든 공제를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다음 표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였다.

[표 41] 과세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산출방법1	산출방법2
1200만원 이하	과표×6%	과표×6%
4600만원 이하	72만원+(과표-1,200만원)×15%	과표×15%-108만원
8800만원 이하	582만원+(과표-4600만원)×24%	과표×24%-522만원
3억원 이하	1590만원+(과표-8800만원)×35%	과표×35%-1490만원
3억원 초과	9010만원+(과표-3억원)×38%	과표×38%-2390만원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및 공제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을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하고 결정세액을 산출하였다.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파악하여 이를 별도로 산출하였다.

$$* \text{종합소득세대비 근로소득세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 \text{근로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K. 근로소득세액공제

[표 4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제 도	공제한도
1991	총급여 360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3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6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7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60만원
2002	상동	40만원
2003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45만원
2004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5만원+50만원초과분30%	50만원

L. 참고: 금융소득세액 산출과정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득세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득세액을 고려한 바 있다.

가구 총계로 주어진 이자 배당소득의 개인별 배분에 있어 반드시 소득자들만에 적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전세유인을 고려한 경우 비현실적이다. 여러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의 존재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계좌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는 한 가구의 가구원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인가구원수로 나누어 금융소득을 성인들에게 적용하였다. 먼저 이자소득의 경우 정기적 소득으로 보아 월평균*12를, 배당소득의 경우 연말 배당 등 연 1, 2회 정도로 비정기적 소득으로 파악하여 조사된 금액의 합계를 연소득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후 얻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후소득으로 가정하여 $\text{세후소득}/(1-t) = \text{세전소득(과세대상)}$ 을 구하여 이를 성인가구원에 배분하고 이에 14%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였다. (*참고: 09년 평균시중은행 예금이자율 (3.26%), 가중평균배당수익율(1.1%) (2010년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이렇게 개인별로 배분하였음에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자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테이터상 2인) 종합과세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가구원수로 배분한 이자배당소득을 원천분리과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14%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것에도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비과세(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저율과세(우대저축 9.5%) 또는 30-90%의 높은 과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탁법(65조)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이나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여부나, 개인연금저축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근로자 우대저축, 생계형 저축, 농어민 조합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의 유무를 알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경우 9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본 작업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여 감면 또는 감액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농특세가 부과되나, 가계동향자료의 특성상 비과세저축예금이나 저율과세상품 등 세금우대저축의 개인별 또는 가구전체의 가입여부 및 그 총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납부해야 하는 농특세액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3. 소결: 소득세 추계 정확도 및 본 추정의 한계점

미시자료로 추정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징수분 대신 결정세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명재, 2008) 왜냐하면 첫째, 징수분 세수는 징수시점을 기준으로 통계를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징수분 세수간에 시차가 발생하여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마땅히 징수되어야 할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탈세

와 체납이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탈세와 분명히 구분된다. 징수분 세수는 실제로 징수된 세수만을 통계로 잡고 있기 때문에 탈세에 의한 것과 체납 등에 의한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탈세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체납분을 제외하여야 한다.⁴⁹⁾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계한 경우 1인당 세부담 및 총계수준은 국세통계연보의 1인당 세부담 및 총계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미시자료로 추계한 1인당 세부담은 약 111.9만원인 반면, 국세통계연보상 1인당 세부담은 약 126.7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도 미시자료로 추계할 경우 약 16.3조원이지만,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소득세 세수는 약 20.0조원이다.

물론, 주택자금 및 기부금 등 특별공제, 장애인 등 관련 추가공제, 대부분의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현실과 밀접하게 적용하지 못한 한계도 분명하다. 특히 과거로 갈수록 국세통계와 미시자료를 이용해 추계한 소득세수의 괴리가 다소 커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풍부한 자료와 엄밀한 계산과정이 요구된다.

[표 43] 근로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1인당 세부담

(단위: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정세액(국통),A	66.2	76.7	82.1	91.8	105.5	101.0	89.9	102.7	114.6	126.7
본보고서 추정,B	53.2	43.0	59.8	51.8	79.5	82.5	87.7	83.5	104.2	111.9
B/A	80.4	56.0	72.8	56.5	75.4	81.7	97.5	81.3	90.9	88.4

주: 납세인원으로 나눔(과세미달추정인원 및 과세미달자 포함)

[표 44] 근로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총계

(단위: 조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정세액(국통),A	7.6	8.9	9.8	11.6	14.1	14.2	12.9	15.6	17.8	20.0
본보고서 추정,B	6.0	4.9	6.9	6.3	10.2	11.0	11.9	12.0	15.2	16.3
B/A	78.6	54.6	70.9	54.7	72.5	77.5	92.3	76.7	85.3	81.6

주: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는 추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 중에서 연말정산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본보고서에서 추정한 근로소득세에는 사업소득이 없어 추후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49) 성명재(2008),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통권 제 58호), p.163

[표 45] 종합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1인당 세부담

(단위: 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정세액(국통),A	148.9	159.1	170.2	201.6	229.5	224.4	235.4	252.0	279.9	302.6
본보고서 추정,B	88.5	96.3	99.8	103.3	109.0	114.7	171.4	173.4	202.6	213.7
B/A	59.4	60.5	58.6	51.3	47.5	51.1	72.8	68.8	72.4	70.6

주: 납세인원으로 나눈(과세미달추정인원 및 과세미달자 포함)

[표 46] 종합소득세 징수 및 추정 수치 비교: 총계

(단위: 조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결정세액(국통),A	6.3	6.9	7.4	9.2	11.3	11.7	11.7	13.2	15.2	16.9
본보고서 추정,B	3.7	4.2	4.4	4.7	5.4	6.0	8.5	9.1	11.0	11.9
B/A	59.4	60.5	58.6	51.3	47.5	51.1	72.8	68.8	72.4	70.6

가계동향조사자료로 세수추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해당 통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관련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세금과 관련된 변수들이 부족하다. 세금 계산과정과 항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각 과정에서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다. 다음 표는 각 자료의 소득분위별 평균 근로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 기준, 1분위의 근로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1,074만원, 소득세 10분위 자료의 경우, 1,463만원이다. 이는 과표구간이 1,000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며 명목소득세율은 8%이다. 2008년 기준, 10분위의 근로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9,354만원, 소득세 10분위 자료의 경우, 9,779만원임. 이는 과표구간이 6,000~7,000만원에 해당하며 명목소득세율은 26%이다.

[표 47] 소득수준별 연간 근로소득, 2008

(단위: 백만원)

가계동향조사		소득세 과표 10분위	소득세 과세표준
1분위	10.74	1분위(3.6): 14.63	1000만원이하(3.8): 22.40
2분위	18.89	2분위(3.6): 17.23	1200만원이하(4.4): 35.18
3분위	24.54	3분위(3.6): 21.25	3000만원이하(8.7): 47.28
4분위	28.75	4분위(3.6): 24.78	4000만원이하(12.4): 67.17
5분위	34.21	5분위(3.8): 28.71	4600만원이하(13.3): 76.71
6분위	39.44	6분위(4.3): 33.34	6000만원이하(14.9): 87.18
7분위	44.86	7분위(5.5): 39.11	8800만원이하(17.7): 107.96
8분위	52.49	8분위(8.4): 46.88	10억원이하(18.9): 206.63
9분위	62.97	9분위(11.2): 58.55	10억원초과(32.3): 2254.87
10분위	93.54	10분위(18.3): 97.79	

-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의 실효세율임
 2. 소득세 자료는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데이터임

즉, 가계동향조사 자료에는 최고소득세율 적용구간(고소득자)의 통계가 상당히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2010년에 최고소득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소득세율의 인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가구들은 소득세율 인하((2008) 8, 17, 26, 35% → (2009) 6, 16, 25, 35% → (2010) 6, 15, 24, 35%)의 혜택을 받은 가구들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나 혹은 개인별 상세한 소득 및 지출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추계하고 그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 부록 II: 지하경제 규모, 과표양성화 관련 제도 변천

- Schneider 외(2012)에 따르면,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17.9%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7%에 해당

[OECD 34개국의 지하경제 규모 (2012.10 연구)]

(단위: GDP대비 %)

No.	Country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1	Australia	14.4	14.3	14.3	14.1	13.9	13.7	13.7	13.7	13.7	13.2	13.5	13.4	13.8
2	Austria	10	9.8	9.7	9.8	9.8	9.8	9.8	9.6	9.7	9.5	9.7	10.6	9.8
3	Belgium	22.7	22.2	22.1	22	22	21.8	21.8	21.4	20.8	20.3	20.5	20.7	21.5
4	Canada	16.3	16	15.9	15.8	15.7	15.6	15.5	15.3	15.2	14.9	15.5	15.4	15.6
5	Chile	19.9	19.8	19.6	19.6	19.4	19.1	18.9	18.7	18.4	19.1	20.5	19.8	19.4
6	Czech Rep.	19.3	19.1	18.9	18.8	18.7	18.4	17.8	17.3	16.3	15.2	15.7	15.5	17.6
7	Denmark	18.4	18	18	18	18	17.8	17.6	17	16.5	15.3	16.2	16.2	17.3
8	Estonia	-	25.6	25.3	24.9	24.3	24	23.4	22.7	22.5	20.8	24.3	22.5	21.7
9	Finland	18.4	18.1	17.9	17.8	17.7	17.6	17.4	17.1	16.6	16.4	16.7	16.8	17.4
10	France	15.7	15.2	15	15.1	15	14.9	14.8	14.8	14.5	14	14.5	14.6	14.8
11	Germany	16.4	16	15.9	16.1	16.3	16.1	16	15.6	15.3	14.8	14.6	15.1	15.7
12	Greece	28.5	28.7	28.2	28	27.4	27.1	26.9	26.4	26.5	26	25.3	25.1	27
13	Hungary	25.4	25.1	24.8	24.5	24.4	24.1	24	23.7	23.7	23.1	23.1	23.1	24.1
14	Iceland	16	15.9	15.8	16	15.9	15.5	15.1	15	14.4	13.8	14.7	14.4	15.2
15	Ireland	16.1	15.9	15.9	15.9	16	15.8	15.6	15.5	15.9	15.9	17.5	16.5	16.1
16	Italy	27.8	27.1	26.7	26.8	27	27	27.1	26.9	26.8	26.7	26.5	26.7	26.9
17	Japan	11.4	11.2	11.2	11.3	11.2	10.9	10.7	10.4	10.3	11	11	11	11
18	Korea, Rep.	28.3	27.5	27.3	26.9	26.8	26.5	26.3	25.9	25.8	25.6	24.5	24.7	26.3
19	Luxembourg	10	9.8	9.8	9.8	9.8	9.8	9.7	9.6	9.3	9.1	9.3	9.6	9.6
20	Mexico	30.8	30.1	30.3	30.4	30.5	30.1	29.9	29.2	28.8	30	30	30	30
21	Netherlands	13.3	13.1	13.1	13.2	13.3	13.2	13.2	13.2	13.1	12.7	12.9	13.6	13.2
22	New Zealand	13	12.8	12.6	12.4	12.2	12	12.1	12.1	12	11.8	12	12	12.2
23	Norway	19.2	19.1	19	19	19	18.5	18.5	18.2	18.1	17.7	18.6	18.2	18.6
24	Poland	27.7	27.6	27.7	27.7	27.5	27.3	26.9	26.4	25.4	24.7	24.6	23.8	26.4
25	Portugal	23	22.7	22.6	22.7	23	23.1	23.3	23.2	22.5	21.9	22	22.2	22.7
26	Slovak Rep.	18.9	18.9	18.8	18.6	18.3	18.1	17.6	17.2	16.6	16	15.8	15.8	17.5
27	Slovenia	27.3	27.1	26.7	26.6	26.4	26.2	25.8	25.3	25.3	24.6	23.5	23.7	25.7
28	Spain	23	22.7	22.4	22.4	22.4	22.5	22.4	22.4	22.3	22.9	24.5	23.5	22.8
29	Sweden	19.6	19.2	19.1	19	18.7	18.5	18.6	18.2	18	17.7	17.9	18.1	18.6
30	Switzerland	8.8	8.6	8.6	8.6	8.8	8.6	8.5	8.3	8	7.2	7.8	8	8.3
31	Turkey	32.7	32.1	32.8	32.4	31.8	31	30	29.5	28	28.6	29.4	29	30.6
32	UK	12.8	12.7	12.6	12.6	12.5	12.4	12.4	12.3	12.4	12.1	12.9	12	12.5
33	US	8.8	8.7	8.8	8.8	8.7	8.6	8.5	8.4	8.6	8.6	9.3	9.1	8.7
	Average	19.2	19.1	19.0	19.0	18.9	18.7	18.5	18.2	17.9	17.6	18.0	17.9	18.4

자료: Schneider(2012.10), 이스라엘은 정보 부재로 평균 구할 때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

	공제율	공제한도	적용시기/일몰기한
1999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10% 적은 금액	1999.9.1부터 2002.11.30.까지
2001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연간 5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00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3	여신전문금융법상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30%로 상향조정	상동	2002.12.1부터 2005.11.30까지 연장
2004	직불카드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로 통일(중전 직불카드 30%)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공제대상 추가 ※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는 2005년부터 적용	상동	2004.1.1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2005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15%로 상향조정	상동	2004.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6	연간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15%	상동	2005.12.1부터 2007.11.30까지 연장
2008	연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	상동	2008.1.1.부터 2009.12.31까지 연장 (단, 2008년 과세 기간에는 07.12.1.~ 08.12.31의 지출분을 공제)
2010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 의 20%(단, 체크카드, 직불 카드, 선불카드는 25%)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2010.1.1.부터 2011.12.31까지 연장
2011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 의 20%(단, 체크카드, 직불 카드, 선불카드사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30%)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2011.1.1.부터 2014.12.31까지 연장

자료: 국세청 용역보고서(2012.9),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 「현금영수증」 제도 변천

	변경내용
2005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수취금액의 15%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현금결제 수수료 면제),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1.5%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5천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가능
2007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10년 말까지):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2008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50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년 7월 1일부터)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공제율 2%
2009	- 가맹점 부가세공제한도 700만원 상향조정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부가세 세액공제(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 성실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신설(2010.12.31까지)
2010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300만원 - 현금영수증 미가입가맹점 가산세 1%(중전 0.5%)
2011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한도 500만원 하향조정 · 음식숙박업영위간위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공제한도 700만원(2012년 말까지 일몰기간 연장)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2013년 말까지) ○ 성실사업자(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연장(2012.12.31까지)

자료: 국세청 용역보고서(2012.9),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변천

	변경내용
199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공제율 0.5%
1996	공제율 1%로 상향조정
199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에 직불카드 포함
1999	공제한도(300만원) 신설 ※ 1996년에 신설된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이후 1998년 개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조특법 122조로 이전
2000	○ 공제율 2%로 인상,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 업종 명확화
2004	공제율 1%로 축소
2005	공제율: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상 1.5%
2006	영수증 교부대상을 일반사업자에서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 - 여객운송업, 목욕이발미용업, 입장권발행사업자 등의 업종은 제외
2008	○ 공제율 인상: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상 2% ○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신설(2010년 말까지)
2009	○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확대 - 공제율 인상: 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 일몰기한: 201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11	○ 일몰기한 : 2012년 말까지 연장 - 음식·숙박업 영위간위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공제한도 7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제도 폐지 ○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기한: 2012년 말까지 연장

자료: 국세청 용역보고서(2012.9),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변천

	변경내용
1997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 일몰기한: 2003년 말까지
2001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 변경 - 기존방식(매출액 증가분의 50% 소득세 세액공제)과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
2003	○ 공제금액(매출액의 10%) 축소
2004	○ 공제율을 5%로 축소, 일몰기한: 2006년 말까지 연장
2007	○ 일몰기한: 2008년 말까지 연장
2009	○ 일몰기한: 2010년 말까지 연장
2011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 적용시기: 2011.1.1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부터

자료: 국세청 용역보고서(2012.9),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 「과세표준 양성화」 관련 제도 변천

	변경내용
1999	○ 경비처리원칙 마련(소득세법 §27의1) ○ 기장세액공제제도 신설(소득세법 §56의2) ○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경비 등 지출증빙수취 원칙(소득세법 §160의2, 시행령 §208의2) ○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부가법 §26③) -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업종: 매입세액의 20%,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 매입세액 30%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보완(부가법 §22의⑤, 시행령 §70의3⑤) ○ 과세특례 적용배제기준의 확대(부가법시행령 §74의②) ○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제도 폐지(부가법 §32의3③) ○ 표준신고율제도 폐지(부가법 §28②)

	변경내용
2000	○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부가가치세법 §25,시행령 §74): 과세특례제도 폐지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순화(부가법 §26, 시행령 §74의3) - 소매업(20%), 제조업(22%), 전기가스수도업(21%)→ 20% - 건설업(37%),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41%), 부동산임대업(43%), 농림어수렵업(43%), 기타서비스업(40%)→30% - 음식·숙박업(50%), 운수창고통신업(50%)→40%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상향조정(부가법 §26, 시행령 §74의3) - 간이과세자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차등공제: 부가가치율 30% 이하 업종 20%, 30% 초과업종 30% → 부가가치율 20% 업종: 20%, 부가가치율 30%: 30%, 부가가치율 40%: 40% ○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부가법시행령 §74②)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신설(부가가치세법 §26조의3, 시행령 §74조의5) -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제(공제율 105분의 5)
2001	○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조정(소득세법 시행령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에서 대리, 중개 등의 업종기준을 삭제
2002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소득세법 시행령 §143)및 관련 규정보완(소득세법 시행령 §201의3①, §205③)
2004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율 인상(소득세법 §81)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 소득공제 되는 지로범위 명확화(조특령 §121의2): 사업자의 과세자료 및 지로 납부자에 대한 정보포함시 공제허용
2005	○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122의2⑨)
2006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세법 §147조⑥) - 복식부기의무자 → 모든 사업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소득령 §132③)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금액 5만원 초과분(중전 10만원 초과분) ○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104의5) -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변경내용
2007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국세기본법 §81의6④) ○ 사업용계좌제도 도입(소득세법 §160의5, 시행령 §208의5, 조법 §128④) ○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소득세법 §56의2①) - 성실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장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 ○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소득세법 §160의2, 소득세법 §81④, 소득령 §83, 소득령 §208의2) ○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 ○ 전문직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 소득령 §147의2②)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세법 §52⑪, 소득령 §113의2) ○ 성실사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 및 대상여부 판정 등(소득세법규칙 §58의2, 3) ○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득세법 시행령 §208⑤)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규모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부여: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의료보건용역제공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 제외))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해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적용(조특법 §122의2⑨, 조특령 §117의2⑭)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제 확대시행(조특법 §122의2, 조특령 §117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조특법 §126의4, 조특령 §121의4):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 도입(조특법 §126의5, 조특령 §121의5): 200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한 소득공제허용(조특법 §126의2): 2007.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2007년 말까지)(부가법 §74의3④) - 소매업 20%→15%, 음식업 및 숙박업 40%→30%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및 일몰기한 연장(2008년 말까지)(부가법 규칙 §19①, §23의4①)

	변경내용
2008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소득세법시행령 §143④) - 증빙이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가급적 주요경비에 대해서 증빙을 수취하도록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근거과세 강화: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7,200만원→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 4,800만원→3,600만원) ○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2009년 말까지)(소령 §143③, 소칙 §67)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제도보완(소득세법 §81⑨) ○ 사업용계좌제도 보완(소득세법 §160의5, 소득령 §208의5) ○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세 §56의2) ○ 지급명세서제출대상 조정(소득령 §214) ○ 무기장가산세제도 개선(소득세법 §81⑧)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소득령 §143③, 소득령 §145③) ○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 보완(조특령 §121의5) ○ 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2009년 말까지)(부가령 §74의3④) - 소매업 20%→15%, 음식업 및 숙박업 40%→30%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적용시 과세제외(부가령 §15) ○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조) - 명의 위장 사업자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2009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령 §104의5) - 전자신고시 1인당 4만원(종전 2만원), 공제한도 300만원으로 상향(종전 200만원)
2010	○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2012년 말까지)(소령 §143③, 소칙 §67)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교부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부가가치세법 §53조의2①)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일몰규정 연장(2011년 말까지)(부가령 §74의3④) ○ 간이과세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약사, 한의사, 수의사, 공인노무사(부가령 §74①) ○ 유흥주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부가법 규칙 §19①) - 음식업 중 유흥장소(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4/104 적용 ○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시 적경증빙불리가산세 부과(법법 §76⑤)

	변경내용
2011	○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부가령 §74②) - 부동산임대업, 기타 :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사업자 기준으로 단일화) - 2011.7.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부가령 §74②) -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 3억원, 제조업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보완(소법 §81①): 2011년 1월 1일 이후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43③)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확대(부가령 §83①)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제도 보완(부가법 §22⑩): 지연발급과 전송의 무 중복된 경우 중복적용 배제 ○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부과(부가법 §22③): 실제 공급받는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

자료: 국세청 용역보고서(2012.9),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참고문헌

- Schneider,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IZA Discussion Paper* No. 6891, 2012.10
- 강석훈·박찬용,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2003.9.
- 국세청, “세원투명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2.9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에 기초한 소득세 추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0
- 김봉근·정철·박명호,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분석: 앵겔곡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56집 제3호, 2008.
- 김현숙,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6.12.
- 김형준·박명호, “지하경제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함의”, 『미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소 06-06-04, 강병구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7.
- 노영훈·김현숙, “소득과 주택자산의 소득분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문춘걸·김영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제7권, 2002.
- 박명호,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추이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9.11
- _____, “우리나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 추이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0.3.
- 성명재·전영준,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 _____,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 성명재·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 연구』 제1권 제1호, 2008
- 성명재, 『중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12.
-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6.

- _____,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통권 제58호), p.163, 2008.
- _____,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pp.227~255. 2011.6
- 안중범·전승훈·김동준,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2010
- 유일호, “우리나라 탈세규모의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4,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pp.39~68.
- 이철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탈루규모의 추정”, 한국공공경제학회, 『공공경제』 제3권 제1호, 1998.
- 임상엽·정정운, 『2013 세법개론』, 상경사, 2013.2
- 전병목·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 전승훈·신영임,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 현진권·김용대,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는가?”,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2003.9.
- 현진권·임병인, “한국의 유효소득세함수 추정,”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2002.

연구보고서 목록

번호	제 목	집 필	발 간
17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김혜선·황중률	2013. 12
16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장인성	2013. 8
15	NABO 분기 거시계량경제 모형	김혜선	2012. 12
14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김우철·강민지	2011. 12
13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 - 기존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세수추계팀	2011. 6
12	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황진영	2010. 12
11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 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황진영	2009. 12
10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전승훈·신영임	2009. 3
9	경제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	백웅기·황중률	2009. 2
8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 주택 및 순금융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	유승선	2008. 12
7	분야별 자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박승준	2008. 12
6	조세환급청구소송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황진영	2008. 12
5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하여	성명기	2008. 4
4	국가채무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남수·정문종 이성규·박승준	2007. 12
3	거시·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백웅기·박승준	2007. 12
2	한국의 유효소득세 함수 추정: 1998~2005	전승훈	2007. 5
1	조세정책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조경엽	2005. 11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발간일 2014년 2월 27일

발행인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4744)
-

ISBN 978-89-6073-715-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